

2007年 2月

博士學位論文

# 法人稅制度의 進化論的 接近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尹 垆 度

法人稅制度의 進化論的 接近

*An Evolutionary Approach to the Corporate  
Tax System*

2007年 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尹 垆 度

# 法人稅制度의 進化論的 接近

指導教授 金基平

이 論文을 經營學博士 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1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會計學科

尹 垆 度

尹垞度の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委員 \_\_\_\_\_大學校 教授 \_\_\_\_\_印

2006年 12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제2장 진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	5
제1절 진화에 대한 담론 .....	5
제2절 진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	14
제3장 제도와 사회발전 .....	25
제1절 제도의 진화 .....	25
제2절 제도와 사회발전 .....	43
제4장 법인세법의 진화 .....	62
제1절 연구의 모델 .....	62
제2절 법인세법의 탄생 .....	67
제3절 법인세법의 진화 .....	77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	101
부 록 .....	107

## 표 목 차

[표 4-1]	진화적특성의 개념과 범주화.....	66
[표 4-2]	해방전 남·북간 산업비교.....	70
[표 4-3]	법인세법의 형식적 구조변화.....	77
[표 4-4]	법인세법의 형식적 구조변화.....	78
[표 4-5]	납세의무.....	89
[표 4-6]	과세소득.....	90
[표 4-7]	과세표준.....	91
[표 4-8]	세율.....	92

## 그림 목 차

[그림 2-1]	법인세법의 진화.....	67
----------	---------------	----

# *An Evolutionary Approach to the Corporate Tax System*

by Yoon Kyung-Do

Advisor : Prof. Kim Ki-Pyung, Ph. 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approached the enactment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orporate tax law on the perspective of evolution theor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volution process of Korean corporate tax law had its unique evolution process by adapting and responding to the environment chang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

Flowing of such evolution process had characteristics with variableness and unchangeability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cess sometimes had historical evolution with political change.

Even after recovery from Japan's colonial control, Korean autonomy government had much struggle to make a fund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via Korean Civil War, the April 19th Revolution, and the May 16th military uprising.

Because of tax peculiarity, the essential inner dimensions of taxable factors have not been changed while outer dimensions which are process dependable



taxable factors have been extended despite of drastic variation.

The extension of outer dimension in corporate tax law may be explained with the necessity of financial expansion accordingly to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ic scale and the complication of business environment.

Therefore, the more taxable objects and extension of tax obligations , and the bigger tax standard of assessment and the outer dimension of corporate tax law is consequentially has been extended.

Drastic variation has occurred every year.

That is, the drastically increased financial demand due to the financial expansion and corporate environment change caused to secure enough financial resource every year.

As an example, the tax payment obligator is regulated at clause 5 in 2006's corporate tax law while it was regulated at clause 1 in 1949's corporate tax law.

Caluse 2, 3, 64, 86, 97, and 102 are related to the tax payment obligation.

The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 is the main reason for the outer extension of tax payment obligation.

In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 of corporate tax law are as following.

First, the evolution of corporate tax law has characteristic path dependency.

The connotation of taxation factor is path dependent.

Second, evolution of corporate tax law is repeating change and variation by reflecting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corporate tax law is also repeatedly changing and varying according to the political environment change.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어리석은 의문 중에 하나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생성되었는가?’ 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인데도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질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본원적인 임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들에게도 사회과학에 대한 절실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각종 사회제도는 어떻게 생성되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제도는 탄생에서 소멸하는 과정의 일생이 있다. 새로 생겨날 때는 생겨난 이유가 있고 소멸하게 될 때는 소멸하는 이유가 있으며 태어나서 소멸하지 않은 채 발전하면서 존속할 때에는 존속하면서 진화하는 이유가 있다.

인간행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통제해온 사회제도는 역사적이며 당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생활과 함께 하는 사회제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옛날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예식업이란 업종이 없었지만 현대의 혼인제도 하에서는 예식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곳곳에 많이 있는 장례식장만 보아도 장례문화의 양태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지극히 일부의 예를 들었지만 중요하지 않는 사회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 사회제도가 인간행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제도는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사회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어떠한 관심을 갖는가이다.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발전하여 가는가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과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우선 인간집단의 최초의 상태를 상정해 보자. 인간이 집단을 이루면서 접하게 된 것이 특정한 사회제도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제도와 인연을 맺고 살기 시작한 이전의 상태를 원초적 상태라고 명명하여 두자. 원초적 상태 즉 흔히 말하는 아나키(anarchy)상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무질서의 상태였을 것이다. 이 상태를 Hobbes는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하고 열등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회계약을 통하여 협동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우연히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진화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사회제도는 관습과 규범의 집합체이며 사회적 관습과 질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우연의 산물이며 지금까지 존속하는 사회제도는 선택가능한 자연적 경쟁상태에서 선택되어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2006년의 현행 법규로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떤 요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요소는 소멸하여 없어졌으며, 또 어떤 요소는 새로 탄생하면서 생성·변화·소멸과정을 반복했을 것이다. 그 결과 법인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언제, 어떻게 제정되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관심이 가장 궁금한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관심은 주로 현행법규에만 주어질 뿐 그 이전까지의 진화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다. 법인세법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건, ‘처음의 생김 동기’는 있었을 것이다. 그 처음의 동기는 무엇이며, 법인세법의 생김새는 어떠했으며, 어떻게 변하여 오늘날의 모양새가 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변화하지 않고 지속된 것이 있다면 그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법인세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제도화되고 개선되며 지속되어 왔는가? 지속되거나 변화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의 형성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법인세법 구조의 진화과정을 진화론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진화론적 시각은 제도나 행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여 왔다. 제도나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화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제도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 속에서도 어떤 속성을 탐지하는 인자와 그 속성이 변화되는 요인을 구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인간사회를 지배 통제하는 사회제도가 사회계약을 통하여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협동의 관계로 나아가는 자연발생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선택되어 남아 존속하는 사회제도가 우리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회제도의 진화에 관한 연구는 가치 있는 것이다. 논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법인세법도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구속하고 있는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탄생해서 발전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학자에게는 흥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법인세법을 보고자 한다. 즉, 자연과학에서 차입한 진화론적 사고로 법인세법의 생성이나 변화 그리고 소멸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관련 회계제도는 법인세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및 증권거래법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주 관심대상은 법인세법이기에 때문에 본 연구의 범위를 법인세법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고 제2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 왜 사회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진화론적 접근이 필요한지를 기술하고 제 3장에서는 사회제도의 기능과 발전과정을 기술하였다. 제도의 변화와 사회진보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제도가 변하고 사회제도가 어떻게 진보하는가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에 상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을 기술하고 제5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하였다.

## 제 2 장 진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 제 1 절 진화에 대한 담론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래 우리생활과 친숙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윈이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상화의 19세기 영국지배담론의 한 양상(영국사학회 5권)을 중심으로 논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상은 고대희랍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신화, 민담, 혹은 시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는 17세기에 이르러 급격하게 발달한 과학을 통해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발달된 도구를 사용하는 과학은 18세기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자연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산업혁명의 여파로 급격하게 팽창되기 시작한 독서대중과 이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인쇄매체는 다양한 층의 독자를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영향력 있는 잡지에서 생물학, 지질학, 심리학, 자연신학 그리고 정치경제에 관한 다양한 글이 발표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문화에서 수시로 언급되는 주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결국 자연에 있어 인간의 위상에 대한 토론은 도덕과 책임에 대한 기본개념, 인종들 간의 관계,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관계,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 사후세계에 대한 우려 같은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19세기 영국의 지적 분위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sup>1)</sup>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담론 중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빅토리아 시대에 있었던 진화론에 대한 담론이다. 흔히 인간위상의 추락으로 규정짓고 싶어

---

1) 문상화, “진화론: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 『영국사학회』, 5권 (2001.12), p.25.

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진화론은 1859년 다윈의 혁명적인 저술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다윈 이전에 널리 퍼져있던 진화에 대한 개념을 다윈 자신이 근면하게 모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sup>2)</sup> 우리가 진화론을 말하거나 들을 때 생물학을 연상할 필요가 없다. 진화사상의 기원은 생물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계몽의자들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들의 사상을 독일의 법학자들이 계승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의 진화론적 접근법을 생물학에 전용한 것이 바로 다윈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유전학이라는 말도 원래 생물학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라 헤르더가 고안한 말이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회학에서의 진화이론은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다르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학을 모방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과학주의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진화사상은 부퐁(Comte de Buffon)과 라마르크(J.B. Lamarck)의 이론에서 이미 하나의 정식화 된 논리체계로서 거론되고 있었다. 그들의 이론이 발표된 이후 이로부터 사상적 시사와 감을 얻은 많은 이론가들이 진화사상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리엘은 그의 지질학 원리에서 진화사상을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상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생물학 분야의 인식과 세계관에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분야의 학문과 인생관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주지하듯이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을 발표하였다. 다윈의 진화론의 의의는 처음으로 폭넓은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며 인과적이고 기계론적 모델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 고유의 진화적 법칙성과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것과 동시에 중세 이후 교황청이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창조도그마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다윈 이론의 기본 테제는 진화론적 발전과 자연도태에 있다. 다윈은 그의 진화론의 모

---

2) Loren Eiseley, *Darwin's Century: Evolution and the Men Who Discovered It*(New York: Anchor Books, 1990), p.10.

3) 민경국,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 『과학철학』, 5권 (2000), p.137.

델을 맬더스(T.R. Malthus)의 인구론의 법칙 즉 생존경쟁의 법칙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발전시켰다. 다윈은 생존경쟁이란 모든 생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생존할 수 있는 수 보다 많은 개체가 생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익한 또는 우월한 개체의 차이와 변이는 보존되고 불리한 또는 열등한 개체는 파멸되는 자연도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 생물은 자연도태를 통하여 유기적 무기적 생활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량을 하게 되며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화론을 설명할 때 반드시 지적되는 투쟁 혹은 경쟁의 개념은 멀리 베이컨(Francis Bacon)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북극지방의 광대한 땅인 호라티카(Holarctica)의 사람들은 그들의 강한 인내심과 강건한 체력 때문에 남쪽대륙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sup>4)</sup>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남쪽의 지역은 알려진 것처럼 거의 바다로 되어있는 반면 북쪽의 지역은 추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의 도움 없이도 그 지역 사람들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운다.”<sup>5)</sup> 라고 설명한다. 베이컨의 이러한 생각은 동물군(fauna)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을 때 북쪽의 동물군이 남쪽의 동물군을 종종 압도한다고 설명하는 다윈의 진화론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화에 대한 개념은 맬더스(Thomas Malthus)가 1798년에 출간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 이르러 뚜렷하게 나타난다. 맬더스가 『인구론』을 기술한 목적은 공상적인 사회개혁론에 대한 고전학파의 자본주의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맬더스는 국민의 전체 부의 증가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인구론』을 통해 전개했던 것이다. 맬더스는 고드윈이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에서 주장하는 인간사회의 완성가능성에 대한 반박으로 고드윈식의 완성에 대한 불가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고드윈은 『정치적 정의』에서

---

4) “Loren Eiseley, 전제서, p.10.”

5) Francis Bacon, “Of Vicissitudes of Things,” Eiseley, Darwin's “Century: Evolution and the Men Who Discovered It,” p.11에서 재인용.



일종의 유토피아에 대한 개념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 재산의 폐지와 결혼제도의 폐지를 통해 정열과 도벽에서 오는 범죄가 사라질 것이고 인간은 순수하게 이성애에 의해 지배되는 행복한 상태가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여러 가지의 대상, 즉 자유애나, 평등애나, 예술의 추구나, 지식의 욕망 등이 금 후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분할할 것이다. 이것들의 대상은 지금과 같이 소수자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릴 것이다. 자유애는 명백히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되고 자애의 감정은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적 애정의 협애(狹隘)함은 조락(凋落)할 것이다. 진리의 일반적 전파는 일반적 개선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생각에 대해 맬더스는 인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인류가 결혼의 구속력 없이 마음대로 아이를 낳는다면, 그리고 사유 재산이 없어진다면 거기에서 발생할 인구증가와 토지 생산력의 부조화를 맬더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맬더스에 따르면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풍요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악, 불행, 전쟁, 기아 그리고 죽음 같은 것들이 자연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맬더스의 주장은 자연의 조화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신과 인간의 자비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신은 모든 생명체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음식보다 더 많은 생명체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경우이든 국가의 경우이든 자비심이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더욱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이미지는 맬더스에 의해 조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냉혈한으로 바뀐다. 이 세상에서 인간과 자연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주장은 19세기에 이르러 사회적 진화론의 촉매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통해 나타나는 불행, 그리고 사회적 개체로서의 개인의 존재가 강조되게 되고 고드윈이 『정치적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낙관론과 대조 되는데 이는 결국 20세기 이전에 사회적 존재와 생물학적 문제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것이다.<sup>6)</sup>

전술한 라일(Charles Lyell)의 지질학 원론이 출간된 것은 1830년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책의 출간 시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6) “문상화, 전계서, pp.26-29.”

만큼 지질학 원론의 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지층에 발생하는 자연의 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지질학은 자연의 유기적 그리고 무기적 왕국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변화를 탐구하는 과학이며 동시에 지구의 외적 구조와 표면을 수정하는데 사용되는 영향력과 변화의 이유를 밝히는 학문이다. 따라서 무생물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질학 원론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종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일은 “간접적으로 야기된 변화는 모든 생명체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거의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윈에게 있어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일은 인간이 일으킨 무의식적 결과를 포함해서 종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질학 원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라일이 자연에서 관찰된 변화의 창조적 양상을 충분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상태가 불균형해질 경우 넓은 지역의 생태계의 소멸 혹은 재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인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각할 수 없을 만큼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자연의 힘과 시간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변화가 없었다면 다윈의 진화론이 주목받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라일의 『지질학 원론』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생각하거나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론이 라일이 주장하는 시스템의 논리적 귀결이기는 하지만 자신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에 관한 증거를 챔버즈(Robert Chambers)에서 발견한다. 챔버즈는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우주와 유기체의 진화를 지지하는 저널리스트로서 퇴적암의 탐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으며 어떤 생명체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에까지 걸쳐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다. 또한 시간과 개체들 간의 유사성과 상사성이 유기체의 창조에 기본이 되는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당시의 세계 항해를 통해 수집되고 있던 진화의 증거들과 함께 세계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세계관을 뒤흔든 결

7) Charles Lyell, *Principles of Geology* (Univ. of Chicago Press, 1990), p.52.

과를 초래했다.

챔버즈는 라일이 지질학 원론에서 언급한 균일설을 지지하고 있으며 라일보다 구체적으로 진화에 대한 언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챔버즈는 다른 진화론자들처럼 생존경쟁을 믿고 있었지만 생명을 적당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존경쟁이 필요악이라는 18세기식의 자연신학론적 개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흥미 있는 사실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챔버즈가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중시해서 진화론의 역사에서 배제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하는 것은 그의 직업의 성격이나 그가 주장한 진화론의 타당성에 근거해서 진화론이 19세기 영국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된 것이 아니라 그가 『혼적』을 통해 퍼뜨린 진화에 대한 생각이 빅토리아 시대의 중요한 지적 분위기인 진화론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슬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영국에서 스스로에게 벼락을 끌어당긴 로버트 챔버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후손의 애정과 관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에슬리에 따르면 챔버즈에 의해 진화론이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토론할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마침내 1859년에 이르러 『종의 기원』이 출간 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다.<sup>8)</sup>

다윈 이전에 진화론에 관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인물은 월러스(Alfred Russel Wallace)이다. H.M.S Beagle호를 타고 세계여행을 한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영국에만 머물렀던 다윈과는 반대로 월러스는 십여년을 아시아라는 지구의 반대편 지역에 머물면서 종의 변천과 생존경쟁에 의한 자연의 선별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1855년 『자연-역사연감』(Annals of Nature-History)에 기고한 논문에서 ‘자연적 진화성의 체계’를 근거로 진화에 관한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미 십여 년 전에 이것을 구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윈이 자신의 이론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초안을 작성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챔버즈가 『혼적』을 익명으로 출간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후 3년 후인 1858년 「자연도태에 관한 기고」(“Contributions to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라는 논문에서 그는 “야생동

8) “Loren Eiseley, 전계서, p.134.”

물의 삶은 생존 경쟁이다.”<sup>9)</sup>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월러스가 가지는 진화론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윈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피퍼(Edward Pfeif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월러스의 기본 전제는 변종은 생존경쟁의 과정에서 이익을 얻게 되거나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온몸이 털로 덮인다는 사실이 원시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으며 자연의 선택에 의한 털의 부재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진화론을 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은 그가 진화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다”.

피퍼의 지적처럼 월러스의 진화론에 대한 기본개념은 다윈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빅토리아시대가 진화론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가를 가늠하는 증거인 동시에 당시의 지적인 사회가 진화론을 인정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부제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존경쟁의 결과 적자생존이 나타나고 이 과정에 자연의 선별이 개입하는 것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인데 적자생존의 과정에서 변종이 발생하고 이 변종이 새로운 종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다윈은 그의 혁명적인 책 종의 기원에서 종의 가변성과 자연의 냉혹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윈의 주장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즉 현상을 인정하고 실재를 부정하는 반 플라톤적 요소를 발견하는데 이는 리바인(George Levine)이 “종의 기원은 기원을 밝히는 연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사실상 종의 실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적자생존’, ‘생존경쟁’같은 용어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기독교의 위상에 대한 부정이 깔려있음을 본다. 이 용어들은 종의 기원의 결론에서 “뒤엉킨 강둑”으로 다음과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된다. “많은 종류의 많은 식물, 숲에서 노래하는 새들, 스쳐 지나가는 다양한 곤충들, 그리고 축축한 땅위를 기어가는 많은 곤충들로 뒤덮인 뒤엉킨 강둑을 생각

---

9) Wallace에 관한 내용은 Robert J. Richards, *Darwin and The Emergence of Evolutionary Theories of Mind and Behavior* (Chicago: Chicago U. P. 1987), pp.157-84를 참조한 것.

하고, 또 서로가 대단히 다르고 서로에게 대단히 복잡한 형태로 의존하고 있는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법에 의해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10)</sup>

결국 다윈에게 있어서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없는 자연물에 불과하며 이는 인간의 위치를 인간과 자연물의 수평적 관계로까지 전락시킨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윈의 자연관 혹은 진화론 속에 신의 의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신의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긴 시간과 우연에 의해 종이 변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의 기원은 종의 가변성,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 그리고 신의 의지의 실종을 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다윈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종의 기원이 출간된 1859년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정치경제학 비판(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을, 밀(J.S. Mill)은 자유론(An Essay on Liberty)을, 그리고 콜린즈(Wilkie Collins)는 흰옷 입은 여인(The Woman in White)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정교하게 조사하여 현재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며, 정체성의 본질에 관해 주장하거나 넓은 맥락에서 결정적 힘과 정체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결국 1844년 챔버즈가 흔적을 익명으로 출간하였다는 사실이나 윌러스가 새로운 종의 출현에 관련된 법칙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의 초고를 다윈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다윈 동시대에 얼마나 진화론이 영국사회에 널리 퍼져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9세기의 영국에는 종의 기원이 발간되기 이전에 진화론에 관한 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진화론이 종의 기원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독창적 발견이라기보다는 19세기 영국에 넓게 퍼져있었던 과학사상을 다양한 표본을 통해 객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은 다윈의 독창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19세기 영국의 지배 담론들 중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진화론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은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처

---

10) Charles Darwin, *The Origin of Species* (Penguin, 1985), p.459. 『종의 기원』은 다윈 자신에 의해 6번의 개정이 행해졌는데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6판이다.

음부터 확정되어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결국 라일, 챔버즈, 윌러스, 그리고 다윈은 진화론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에 상관없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꼴인데 이에 관련해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유명한 글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이든 철학 책이든 과학 책이든 어느 작품의 내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혹은 심리적이고 전기적인 자료의 한계를 정하면서 주체의 절대성과 창조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어떤 상황아래, 어떤 형식을 통해 주체와 같은 사항이 담론의 질서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 요약하여 주체는 창조의 역할을 빼앗기고 담론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분석된다.

결국 같은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주장을 한다면 푸코식으로 “창조의 역할을 빼앗긴 주체”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아래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알렌(Graham Allen)의 다음과 같은 지적처럼 저자의 의식이 자신만의 것이 아닌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기원은 저자의 단일한 의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다른 언어, 다른 말과 다른 텍스트들이다. 우리가 저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본다면 생각이나 유일하게 의도된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읽혀진 것’, ‘이미 쓰여진 것’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의미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사인(signs)으로서의 텍스트는 “특별한 사회적 맥락, 언어의 한정된 발생과 수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개인의 독립된 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텍스트이며, 개인의 텍스트와 문화적 텍스트는 같은 문화적 재료로 만들어지며 분리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해 촉발되거나 다윈 자신의 독창적인 과학적 발견이라기보다는 빅토리아 시대가 공유하고 있던 지배이데올로기의 한 양상이며 이는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를 과학이라는 담론에 접목시킨 형태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의 기준을 자체의 이익에 부합시키기 위해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재단으로 이것은 그 시대가 갖는 독특한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을 그 시대의 구성원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입시키기 때문이다.

## 제 2 절 진화론적 접근의 필요성

다윈의 이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진화론적 사상은 다윈니즘이라는 개념아래 생물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정치학 역사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사회진화론은 사회정책의 행동방침으로써 구체적인 정치이데올로기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sup>11)</sup>.

사회과학의 연구에 자연과학에서 발표한 이론을 차용할 필요성에서 예종영의 국제정치학의 진화론적 개념 틀과 세계정치진화론에 대한 검토(국제정치학 논총 제 44집4호)를 인용하여 논자가 재구성 한 것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해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종식과 같이 그것이 가속화되어 급격히 이루어질 때, 또는 어떤 일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의식하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변화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냉전의 종식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민족 간 분쟁으로 시작하여 중국에는 불안정한 혼돈의 상태를 야기할 것인지는 보는 이의 상황분석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이론이 뒷받침된 설명이며,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변화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재 인식하게끔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그것을 설명

---

11)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27, no.1(1993), p.409.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거나, 적어도 기존의 이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비판을 통해 중요한 수정 작업이 가해지는 계기가 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과학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재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12)</sup>

사회체제의 하나로서 국제체제의 복잡함은 물리학적 모델보다는 생물학적 모델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잡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 뿐 아니라, 생물학과 국제정치학은 몇 가지 면에서 공유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물론 사회체제가 생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대상을 똑같은 관점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변화한다는 특성, 즉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유추적인 개념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물체나 사회 체제 모두 선택에 대한 압력을 받는 복잡계라는 점, 상호 협력과 상승작용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 변화의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고 혁신에 기초하여 성장한다는 점 등은 양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진화론적 유추의 활용이 제도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화는 단지 생물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주와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도 진화는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적 현상 역시 진화의 대상이다. 우주의 진화가 수십억 년을 거치는 과정이라면, 생물적 진화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을 요하는 과정이며 인류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형태 역시 수천에서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진화는 각기 시간틀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접근법이 물론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에 있어서 진화론적 접근은 다윈(Darwin)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는 하나의 묶음으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며 사회과학 안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진화론적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공통적이며 핵심인 요소는 바로 변화에 대한 인식이다.<sup>14)</sup> 사회과학에서 가장 기본적

---

12) Modelski George and Poznanski Kazimierz , “Evolutionary Paradigms in the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 no3(1996), p.315.

13) “Modelski and Poznanski, 전게서, p.316.”

14)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진화론적 접근을 Evolutionary world politics 홈페이지에 있는 목록을 참조, <http://faculty.washington.edu/modelski/bibliol.html>.



인 진화의 개념을 요약한다면, 한 체계가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상태는 그 이전 상태가 변화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개념은 정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진화론적 세계관을 분리하는 기본 요건이다. 균일설의 원칙이 진화라는 개념에 본래 내재해 있다는 것인데, 변화라는 것은 모든 자연계와 인간 제도를 관통하는 원리이며, 변화한다는 것이야말로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 균일설의 최소한의 정의이다. 류윈틴(Lewontin)에 따르면 변화를 야기하는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야말로 모든 체계를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sup>15)</sup>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가장 주요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관심이다. 톰슨(William R. Thompson)은 변화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평형상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6)</sup>

평형상태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며 순간적인 평형상태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적인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가 바로 표준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변화의 일정함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그 중요성, 범위, 정도에 있어서 영향이 클 수도 있고, 점진적일 수도 급격할 수도 있다. 진화론적 접근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정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은 무엇인가? 진화론적 모델에서 변화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적인데서 찾는다. 다윈에게 있어서 종의 진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이었고 이 과정에서 외부적 환경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전적인 다윈의 진화론 모델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일방적으로 대상에 작용하여 그 대상을 변화시킨다. 종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재생산을 이루거나 아니면 멸종되고 만다. 외부적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종의 진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다윈은 종의 진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진화생물학자가

15) R. C. Lewontin, "Evolution: The Concept of Evolu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New York, NY: Macmillan, 1968), p.203.

16) William R Thompson, "Evolving Toward an Evolutionary Perspective," in William R. Thompson(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London: Routledge, 2001), p.4.

외부적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키티츠(Franz M. Wuketits)는 생물체 각각의 특색을 살펴보면 오직 다윈의 자연선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유기체 내부의 기능적인 제약 역시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정에 있어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 요인에 대한 고려는 진화론적 제도변화의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바를 시사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우 환경의 변화에 전적으로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환경의 영향을 받되, 인과관계에 있어 환경의 영향은 인간의 대응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체제에서 일련의 정책이나 전략을 창조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고, 특정정책이나 전략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의 진화론적 접근을 논할 때 궁극적으로는 목표지향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회 현상에 있어서 진화의 개념은 단지 “변화”한다는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홀파이크(Hallpike)의 경우, 사회적 진화는 결정론적이거나 필연적, 혹은 목적성을 갖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방향성은 지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적 진화의 과정은 내재하는 어떤 잠재력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구조적인 형식의 지속적인 세련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8)</sup>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진화를 단순히 변화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추이에 대한 조감을 통해 나아가서는 그 변화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제도에 대한 이론 역시 이러한 변화와 방향성에 대한 설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진화론적 유추(evolutionary analogy)를 사회제도에 접목시키는 일은 이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고, 변화와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안목은 기존의 주류이론인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 이론이 정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더욱 상세히 이해하기 위한 신선한 노력으로서 진화론적 접근법이 부각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17) Franz M. Wuketits, “Evolution and Causality and Human,” in Michael Schmid and Franz M. Wuketits(eds), *Evolutionary Theory in social Science*(Dordrecht, Holland: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7)

18) C. R. Hallpike, *The Principles of Social Evolu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6), p.15.

## 1. 진화론적 유추의 활용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유추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선택이라는 개념이다. 생물학에서 종의 변화나 생물학적 특성을 설명할 때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듯, 사회제도에서는 사회선택의 과정을 중시한다. 사회적 선택의 대표적 예로서는 선거제도를 들 수 있는데 전쟁의 결과 등도 사회적 선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선택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지만 사회적 선택의 경우는 사회적 협의와 조정,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중시한다. 자연선택은 유전적 형질의 변화를 통하여 작용하고 그 결과는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적 선택은 문화적 요인이나 사회적 기준이 많은 작용을 하며, 어떤 정책이나 전략 등을 통해 인간 행태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비해 훨씬 빠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택이라는 개념은 경쟁을 통한 선택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일반성을 갖는 개념이고 모든 진화과정에서 공통적인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진화는 네 가지 기본 메커니즘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선택 변화 증폭 혹은 강화 그리고 협동이다. 앞의 세 가지는 생물학적 진화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네 번째 협동의 경우는 생물학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회조직에서의 협동(정파, 동맹, 사회운동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은 사회이론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부분이다. 요컨대, 사회진화는 경쟁과 협동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과 전략들 가운데 어느 것이 선택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의 메커니즘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진화적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지역적 혹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극심한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 다양성을 수용하고 따라서 혁신을 조장하는 개방성, 협동을 위한 기술적 개발의 성공 여부, 효율적 경제운용의 능력 등의 면에서 고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진화의 메커니즘이 활발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 역시 시간에 따라 또한 장소에 따라 변할 것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특정 지역 혹은 국가가 다른 곳에 비해 차별적 발전을 이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러한

곳일수록 세계 문제 대한 해결책으로써나 기타 정치·경제·기술·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혁신은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돌연변이는 생물체의 다양함을 야기하는 기본 요인이며 궁극적으로 선택압력을 받는다. 그리고 한번 선택되는 경우, 혁신적 방책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증폭된다.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는 이면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근본적인 과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진화란 기본적으로 혁신과 그 혁신의 확산 과정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진화의 기본적 네 단계 역시 진화적 학습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학습의 개념은 특히 심리학 등에서 주로 인간 개개인을 대상으로 일반화되어왔지만 사회조직 또한 학습의 경험을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의 진화론적 접근이 진화생물학에서 빌려온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는 있지만 생물학의 가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주어진 환경에 단순히 순응하여 적응하는 여타의 생물체와는 달리 인간은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의 학습이 사회조직체의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은 “만물은 변화한다”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극히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화론적 방법론을 채택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대부분의 경우 “변화”라는 가장 최소한의 가정을 넘어 변이와 선택을 주요 가정에서 포함시킨다. 분석의 단위는 국가, 레짐, 신경제제도, 이념, 전략, 정책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국가와 이념의 유형을 예로 들어보자. 특정 시점에서 국가의 형태는 도시국가, 제국, 민족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후의 어떤 시점에서는 다른 유형은 없어지고 민족국가의 유형만 남게 된다. 이 경우 민족국가는 여러 유형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 것이다. 이념의 경우 역시, 어떤 특정 시점에서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의 여러 유형이 공존하다가 나중의 어떤 지점에서는 포기되거나 사라지는 이념들이 생겨난다. 이 경우 자유민주주의는 예를 들어 파시즘, 공산주의 이념과의 경쟁에서 선택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진화론적 접근의 또 다른 장점은 과거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종의 규칙성

을 도출해냄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준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진화론적 접근이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직선적, 기계론적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진화론적 예측 역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방해받는다. 그러나 진화론적 접근이 갖는 차이는 과거의 역사의 진행과정을 진화론적 기제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에 있어서도 진행과정의 예측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이다.

## 2. 진화론의 역사적 변용<sup>19)</sup>

원래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종들이 자연도태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새로운 종으로서 연속적 탄생이라는 진화의 원리를 전개한 순전히 생물학 영역 안에서의 논의였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그 사회적 영향 면에서 볼 때 단순한 생물학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다윈의 진화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생존경쟁’과 ‘자연도태 혹은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는 이후 인간사회에 적용되어 인간 사회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로 새롭게 나타났으며, 19세기 중반 이후의 서양 철학 및 사회학·정치학 등의 사회과학은 물론 여러 학문에 걸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의 주요 용어 및 개념들은 서구 유럽사회에 새로운 시각에서 자연과 사회 및 인간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세기말 서구에서 탄생한 사회다윈주의야말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윈의 진화론과 그것에 의해 파생된 사회다윈주의 간의 연관에 관한 논의들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 학계에서는 이미 다양한 논쟁들이 전개되었고, 지금까지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연구 성과도 상당하다.

반면 한국학계에서도 다윈의 진화론과 사회다윈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

19) 김호연, “다윈진화론의 역사적 변용,” 『강원사학회』 15, no.1 (2000), pp.389-409.

으나 서구사회의 연구 성과에 비한다면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협소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회진화론의 우리나라 수용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연구된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개화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에 논의가 집중되어,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과 그것의 사회적 적용이라는 체제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학계에서 사회진화론은 다윈과의 연관성보다는 스펜서와의 연관성 속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한 이론으로 많이 다루어졌고 개념상의 모호성도 피할 수 없었다.<sup>20)</sup>

최근 들어 이러한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몇몇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 3. 진화론과 사회제도와의 접목

생물학에 있어서는 다윈의 종합적 진화론(the modern Darwinian synthesis)이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제도의 연구에서는 그에 비견할만한 대표적 진화이론은 없다. 사회제도의 진화를 설명하는 진화이론으로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일관성을 갖는 통합이론은 없다는 것이다. 진화론적 개념을 사회제도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사회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적 접근을 가능하게 이론적 틀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사회생물학이나 사회진화론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생물학적 결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유전적 형질이나 생물적 특성이 인간의 사회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보고자 함이 아니란 것이다. 사회과학일반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라고 하면 인간의 생물체로서 진화함에 따른 사회적 현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인간의 생물체적 진화에 따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변화 또한

---

20) 김병곤, “사회진화론의 발생과 전개,” 『역사비평』 no1 (1996, 봄호), pp. 305-312. 윤건차,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 『역사비평』 no1 (1996, 봄호), pp.313-324. 박찬승, “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no1 (1996, 봄호), pp. 339-354.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손색은 없다.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 굳이 배제될 필요는 없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사회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와 관련한 연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야 할 지도 모른다.

사회제도의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은 변화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제도는 변화 즉 진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 사회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는 진화적 과정의 결과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왜, 어떻게 그러한가는 지속적인 증명을 요하는 바이지만 간단히 상상력을 동원해 보더라도 모든 사회제도가 태동하였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의 그것을 비교해본다면 그 차이는 꼬집어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명백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회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변화해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사회제도의 많은 속성이 변화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 이었나 또는 부정적이었나에 대한 판단은 가치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많은 사회제도의 구성요소와 내용이 점진적으로 세분화, 세련화, 복잡화해온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에서도 획일적인 규칙성이나 시계추의 움직임과 같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지만 상시적인 변화에도 일종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변화라 할지라도 아무런 질서 없이 제멋대로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모종의 규칙성을 보여주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적 접근방법은 그러한 규칙성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사회과학 일반에 있어서 진화론적 연구는 20세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계보는 다윈 이전에 이미 사회학자인 콩트(Auguste Comte)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스펜서(Herbert Spencer), 슈페터(Joseph Schumpeter), 파슨즈(Talcott Parsons)등의 주요 사회과학 이론가들 역시 집합적 인간 행태를 설명, 분석, 예측하는데 진화론적 원리와 개념을 활용한 바 있다. 모델스키가 1970년대 후반 해군력의 집중과 그에 관련한 세계강국의 흥망성쇠 및 계승 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주기이론 작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진화론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지만, 진화론적 유추를 통한 본격적인 작업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모델스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마침내는 진화의 개념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호 진화적 과정까지 포괄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장주기이론이 세계정치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정치에 대한, 그 중에서도 강대국의 부침에 대한 연구라면, 다른 부문의 진화, 예를 들어 경제체제나 무역 레짐과 같은 경제적 제도 혹은 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운동 등도 역시 별도의 진화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통합화 현상이라든지 세계적인 추세로서의 민주화 과정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온 국제정치체제의 윤곽이 더 자세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sup>21)</sup>

역사적 경험은 다양성, 개방성, 기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강한 진화의 잠재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그러한 지역, 부문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왔다. 그리고, 세계체제의 진화는 정치적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 모두에서 일어나며 이를 설명하는 것은 변이, 협동, 선택, 강화의 네 단계의 학습과정을 통해서이다.

사회제도의 진화론을 간단히 말한다면 사회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인간 행태의 결과로서 정형화되어 나타나는 법이나 관습 등을 제도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 분명히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며, 또한 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하여 구조역사적인 이론의 구성을 통해 이해와 설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제도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나 분석이 아니라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가, 그러한 사회체제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진화과정을 야기하는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제도가 진화적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는 사회제도가 고정불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중시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추구한다. 즉, 진화론적 접근법은 사회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제도의 구성요소와 내용이 백 년 전 혹은 오백 년 전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

21) 예종영, “세계정치와 진화: 국제정치학의 진화론적 개념들과 세계정치 진화론에 대한 검토,” 『국제정치논총』 44, no.4 (2004) p.39.



그 차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러한 결과를 낳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한 것이다. 진화론적 연구는 많은 사회제도의 구조적, 체제적 연구를 통해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제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의 영역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체제적 접근이다. 진화론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제도의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즉 크게 본다면 인류 전체가 자신을 어떻게 조직해왔고 또 재조직해왔는가가 연구의 대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 그림”(big picture)에 대한 연구이고 정치학적 용어로 말한다면 체제적 연구이다.

둘째, 사회제도의 연구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고려는 변화를 조명하는데 특히 유익하다.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진화론적 개념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영역에 있는 역사적 자료를 사회과학에 적절한 형태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갖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진화론적 개념의 사용은 분명한 진화의 기제(mechanism)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의 진화론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있는 진화론은 없다. 그러나 진화론적 사고의 적시성의 척도를 변화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갖고 있는가에 두는 것은 대부분의 진화론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단순히 진화의 결과(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을 설명해내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다윈에게 있어서 종의 진화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자연선택은 이것의 좋은 예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선택 메커니즘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 메커니즘은 진화이론에 있어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협동 변이 혁신 그리고 강화 역시 진화의 중요한 개념이며 이들은 모두 사회적 학습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

22) 다음을 참조. Goerge Modelski, “Evolutionary World Problems of Scope and Method,” in Willam R Thompson(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London: Routledge 2001), pp.17-18.

## 제 3 장 제도와 사회발전

### 제 1 절 제도의 진화<sup>23)</sup>

특정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체제로서 한꺼번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분적인 변화들이 점차 확산되고 한 제도 내에서도 각기 자기 영역을 확보하면서 전체가 오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양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진화하는 것은 일시적 일회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흐름의 방향성 또는 유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제도 또는 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원들의 선호 등에 의하여 지속하거나 변화 또는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선택은 사회적 조정과 합의 등 사회적 환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문화적 여건 또는 정책이나 전략 등 인간의 사고나 행태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제도의 진화는 제도의 이해당사들이 스스로 가진 반복적 경험과 진화적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자생적 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 시각은 장기적 역사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시간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에 접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분석단위와 문제영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상대적인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즉 특정 행위자 또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나 분석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접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진화론적 접근은 시간의 흐름속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이 보다 쉬어지기도 할 것이다.

---

23)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행정논총』 44, no2 (2006) pp.218-241.

신제도주의의 최근의 흐름은 ‘제도’ 개념의 변화이다. 제도란 단일체 아니라 복합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를 이해하는 최근의 지배적인 경향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도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복합체로 인식함으로써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제도이론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새롭게 재결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 제도변화 과정에서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게 되고, 또 행위자간 권력관계를 이론적 틀 내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하위 제도들로 구성된 제도복합체를 상징하게 되면서 제도 간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제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상호보완성개념이며, 이에 기반한 경제모형과 경제적 성과에 관한 논의가 이른바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s) 이론이다.

전통적으로 신제도주의의 주된 관심이 제도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었다면, 최근의 주된 관심은 제도변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형식적으로 대부분의 제도변화는 급격하거나 혁명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만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통상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신제도주의가 갖추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부터 최근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는 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절된 균형모형이나 경로의존 개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완만하고 점진적인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동시에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최근의 제도 분석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도의 불완전성, 제도의 내적 모호성, 행위자, 권력관계 등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도의 안정성이나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또 하나의 최근 흐름이다. Lieberman<sup>24)</sup>이 표현한 대로, “아이디어의 재발견 (bringing ideas back in)”이야말로 제도연구에 있어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에서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서로 다르다고

---

24) Robert C. Lieberman,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2002), p.607.

할 수 있는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면, 이와는 달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안정과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되면서 행위자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는데, 아이디어의 변화와 이에 기반 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전략적 개념으로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틀짓기(framing)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제도적 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경향이다.

### 1. 복합체로서의 제도와 제도의 상호보완성

신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은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두 가지 흐름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특정한 제도의 복합적 구성요소에 주목하는 경향으로서, 특정 제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Lowndes<sup>25)</sup>는 “제도에 대한 전체적 개념에서 분화된 개념으로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도는 내부적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반드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할 이유가 없으며,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의미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요소들이 특정 시점에서는 특정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요소들 간에는 갈등적인 관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은 제도가 복합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제도 연구에 있어서 ‘시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즉,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일종의 마스터플랜 하에서 제도를 설계하

---

25) Vivien. Lowndes, ed., *Institutionalism,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2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David Marsh and Gerry Stoker, 2002), p.104. trans

26) Karen Orren,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trans. S. Skowronek,(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면서 제도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때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편입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구성요소 간에는 완벽한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체로서 인식하게 되면, 제도가 다양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들이 결합되어 상위개념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제도적 모습으로서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상위 개념의 제도가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제도는 다시 선거제도, 의회제도, 지방자치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제도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것들이 결합되어 상위 개념의 제도를 구성할 수도 있고 하위 개념의 제도들을 구성 요소로서 가질 수도 있다. 이 때 어떤 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심이나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 2. 제도의 상호보완성

다양한 제도들이 결합되어 제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제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위계성(hierarchy)이라는 개념이다. 특정 영역에서 특정 형태의 제도의 존재가 다른 영역에서 다른 제도의 존재, 기능 및 효율성을 강화시켜줄 때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즉,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 간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제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영역에 있는 제도가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의 제도의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아래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의 맥락, 즉 다른 상호보완적 제도의 존재 여부와 존재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27)</sup>.

---

27) Bruno. Amabl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7, no.4 (2000), pp.645-687.

Amable<sup>28)</sup>와 Hall<sup>29)</su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제도는 다른 제도와 독립적으로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도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복수의 제도가 결합되어서 나타난 효과가 개별 제도의 독립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현상에 대한 제도의 영향력은 특정 제도만을 분리해서 고찰하는 것 보다는 제도의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ollingsworth<sup>30)</sup>는 제도의 상호보완성은 제도의 이식과 수입에 대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도는 다른 제도들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회로 이식되기 어렵다. 특정 영역에서 어떤 제도가 최적의 제도인지를 탐색하고 그에 기반 하여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이른바 벤치마킹), 이식된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를 바로 제도 간 상호보완성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North<sup>31)</sup>도 강조하고 있듯이 경제성 성과를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가 상호의존적인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 제도 하나만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Grief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으로는 제도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수평적으로 동일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다른 제도의 운영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들이 상호간의 영향력에서 수직적인 관계를 보일 경우 제도의 위계성이 존재한다고 일컫는다.<sup>32)33)</sup>에서는 위계성에서 상위에 위치하는 제도는 가장 자주 변

---

28) Bruno. Amable,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9) "Peter A. Hall. et al.,"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 in an Era of Interdepend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35-163.

30) Rogers J, Hollingsworth, "Doing Institutional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Innov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00), 7, no.4, pp.595-644.

31) Douglas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32) 제도적 위계성 개념은 제도주이 경제학자인 Greif(2006)도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하지 않는 제도라고 말하고 있다. 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존재하게 되면 특정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 다른 제도가 이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위계적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제도가 변화할 경우 다른 제도의 변화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 제도의 상호보완성과 생산 레짐(*regimes*)이론

제도의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흐름이 이른바 자본주의 다양성 혹은 생산레짐 이론이다. 생산레짐은 세계시장경제에서의 특정한 생산방식과 경쟁방식을 낳게 하는 제도의 각 요소들이 서로 얽혀있는 제도의 상호보완성을 특징으로 한다.

생산레짐은 다양한 제도들이 무작위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제도 간에는 상호보완성에 기반 한 응집성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간 상호보완성은 제도운영의 유사성이나 구조적 동형화는 다르다. 즉,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한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제도들은 상이한 원칙에 기반 해서 병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그들 간의 결합이 단일한 논리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4)</sup>

자본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금융제도, 노사관계, 교육 및 훈련제도 그리고 기업 간 관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의 각각의 특징과 결합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조정시장경제는 장기적 시각을 강조하는 금융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 초기 직업훈련에 대한 강조, 기술 및 표준 설정에 있어서의 기업 간 협력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특정적이거나 산업특정적인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금융이 뒷받침되

---

33) “Bruno. Amable, 전게서, pp.645-687.”

34) Bruno. Amable,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6.

어야 한다. 또한 가로채기(poaching)의 위협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적인 임금설정이 필요하며, 고숙련 노동자들로부터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숙련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술이전과 표준설정을 위해서는 산업에 공통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35)</sup>

자유시장경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지만 고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금융제도, 비규제적인 노사관계와 약한 노조, 일반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및 훈련제도, 기업 간 협력보다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도 제도요소들 간의 강력한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금융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활동으로 재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에 대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자신을 얽매게 하는 특정 숙련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빠른 적응을 가능케 하는 일반교육을 받고자 한다.<sup>36)</sup>

#### 4. 제도변화

제도변화에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은 변화의 과정과 변화의 원인이다. 첫째, 변화가 과연 근본적이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점진적이며 완만하게 이루어지는가에 관련된 논쟁이다. 단절된 균형모형에 의하면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도변화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sup>37)</sup>, 이에 따라 최근의

---

35) “David. Soskice, et al.,”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06-109.

36) “David SoskiceIbid, 전게서 pp.110-112.”

37) 그렇다고 신제도주의에서 불연속적, 급진적, 혁명적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자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화는 연속적이면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연구는 점진적 제도변화의 과정과 형태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8)</sup>

둘째 제도변화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도변화의 원인은 외부적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경향은 점진적이고 완만한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도를 단일체로서가 아니라 복합적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도 달라진다. 즉,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상황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충돌을 일으키거나 갈등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제도의 변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sup>39)</sup> 제도변화가 단순히 외적 충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내부적 제도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게 되면 경로의존을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경로의존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앞으로의 일의 전개 방향을

---

38) "John L. Campbell, et al.," *Mechanism of 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 Interaction, Interpretation, and Bricolage*, 『*Evolutionary Economics and Path Dependence*』 (Cheltenham: Edward Elgar, 1997), pp.10-32.

"John L. Campbell, et a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159-189.

Robert C. Lieberman,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2002), pp.697-712.

Karen. Orren, and Stephen. Skowronek,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Kathleen. Thelen, *How Institutions Evolve: The Political Economy of Skills in Germany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Wolfgang. Streeck, and Thelen. Kathleen,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1-39.

39) Robert C. Lieberman,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 (2002), pp.697-712.

제약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경로의존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제도의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경로의존의 이유에 대한 설명도 쉬워진다. 즉 상황이 변화하거나 환경이 변화해서 기존 제도가 바뀌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기존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Campbell<sup>40)</sup>은 존속변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Campbell<sup>41)</sup>에 의하면, 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변화는 진화적인 동시에 경로의존일 수밖에 없다. 행위자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과거의 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면 제도변화의 과정은 경로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가 기존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이고 이러한 기존 요소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이상 변화의 과정은 진화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기존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만을 재결합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이유는 없다. 기존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에 더 하여 전혀 새로운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새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던 제도의 요소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이들을 기존의 요소들과 결합하는 방식이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롭게 요소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소들이 첨가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화는 보다 더 혁명적, 급진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제도변화는 진화적 대 혁명적 변화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보다는 연속선상에 나타나는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sup>42)</sup>

---

40) “John L. Campbell, et al.,” “Mechanism of 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 Interaction, Interpretation, and Bricolage,” 『Evolutionary Economics and Path Dependence』 ( Cheltenham: Edward Elgar 1997), 10 no.32.

41) “John L. Campbell, et al.,” *Where Do We Stand? Common Mechanism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Research*,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41-68.

42) “John L. Campbell, 전게서, pp.60-61.”

기존의 제도를 구성하던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건 혹은 기존 제도를 구성하던 요소들과 완전히 새로운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건 제도는 기존 요소들의 재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경로의존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제도주의 경제학자인 Greif도 기존의 제도적 요소들의 재결합과 이에 따른 경로의존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Greif<sup>43)</sup>에 의하면 기존 제도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제도가 모두 새로운 제도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새로운 제도는 과거의 제도적 요소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신념, 규범, 그리고 조직 등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이 새로운 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의 초기 상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sup>44)</sup> 따라서 기존 제도의 모습이 새로운 제도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의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서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Greif<sup>45)</sup>는 제도의 정교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제도의 정교화가 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다. 즉,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실패한 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강은 기존 제도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재결합하거나 혹은 새로운 요소들을 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reif도 광범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의도적이며 완전히 새로운 제도변화는 과거의 제도의 결과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경우에는 가능하다. 역할모형, 즉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적 제도가 알려져 있는 경우, 포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

43) Avner. Grief,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Tra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190.

44) North(2005) 또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모두 현존하는 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과정은 경로의존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5) “Avner. Grief, 전게서, p.194.”

## 가. 점진적 변화과정

Streeck과 Thelen은 완만한 변화가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전치, 층화, 표류, 전환, 소모<sup>47)</sup>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sup>48)</sup>

(1) 전치(displacement) : Orren과 Skowronek<sup>49)</sup>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도는 단일한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갈등적인 논리를 내포하기도 한다. 특정 시기에 있어서 제도의 모습이나 기능은 이러한 요소들 중 지배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러한 지배적인 제도의 모습이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한계를 노정하는 경우, 기존에 억눌려있던 요소들을 재발견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도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전치이다. 예로서 영국에서 경제정책이 케인즈주의로 부터 통화정책으로 변화한 경우이다. 전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 틀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던 정책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2) 층화(layering) : 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차별적인 성장이다. 기존 제도의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여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교화하는 수단으로 정당화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도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전혀 다른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된다.

(3) 표류(drift) : 제도의 안정성은 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

46) “Avner. Grief, 상계서, p.194.”

47) 소모(exhaustion)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가 서서히 해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8) “Wolfgang. Streeck, and Thelen, 전계서 pp.1-39.”

49) Karen. Orren, and Stephen. Skowronek,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5-26.

것이 아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도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변화하지 않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제도가 안정성을 띠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결과 제도가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제도가 위축되거나 쇠퇴하게 되는 것을 표류라고 한다. 상황의 변화에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제도는 위축되거나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50)</sup>

(4) 전환(conversion) : 기존의 제도가 새로운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이를 전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환은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처해서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도를 장악하게 됨으로서 새로운 목적으로 제도를 바꿀 때 나타날 수도 있다.

#### 나. 제도의 내적모호성

제도가 갖는 내재적인 모호성 그리고 제도화된 규칙과 그 집행간의 격차에 의해 제도변화가 촉발될 수도 있다. 사회적 규칙의 집행이 항상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과 규칙 집행 간의 격차가 행위자로 하여금 전략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규칙과 규칙집행자 간의 격차에서 점진적인 내부적 변화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Streeck과 Thelen<sup>51)</sup>은 제도화된 규칙과 규칙의 집행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제도설계자의 인지적 한계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

50) Wolfgang. Streeck, and Thelen. Kathleen,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24-25.

51) "Wolfgang. Streeck, and Thelen. Kathleen, 전게서 pp.26-28"

때문이다.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도를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시키고자 하는 유인성을 갖게 된다. 또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sup>52)</sup>

둘째, 제도형성과정은 타협과 절충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다. 따라서 규칙에 모호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 제도설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와 규칙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넷째, 상당수의 제도들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지속성 때문에 제도를 처음 설계한 사람들의 변화, 이를 가능케 한 사회적 연합의 변화, 애당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상황의 변화보다도 더 오래 제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전환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North<sup>53)</sup>도 최근 저작에서 제도변화의 내부적 원인으로 제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North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행위자의 의도성과 불확실성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가 인간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체계에 의해 굴절될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란 없으며 현실은 인간의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기초가 되는 신념에 의해 인간의 마음에 투영될 뿐이다. 그리고 현실의 인식은 불완전한 신념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

52) Marc. Schneiberg, "Combining New Institutionalism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American Property Insurance," *Sociological Forum*, 20, no.1, (2005) pp.93-137.

53) Douglas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60-80.

없다. North에 의하면 제도는 인간을 둘러싼 불완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이 창조해낸 구조물이다. 현실을 인식하는 신념이 내적인 구조물이라면, 제도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간이 외적으로 창안해낸 구조물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는 의도성의 산물인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불완전성과 제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이 만드는 구조에 의해 불확실성이 감소되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제약요인 또한 불확실성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완벽하지 못한 이해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한다.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념에 기초해서 제도를 설계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해서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념이 완벽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신념 때문에 의도와 결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념에 따라 변화시킨 제도가 의도한 방향으로 행위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North가 표현한 대로, “행위자들이 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내며, 새롭게 봉착하게 된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을 집행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가 제도변화를 촉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 다. 행위자와 권력관계

최근 논의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제도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란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제도변화 과정에 있어서 행위자(agency)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며 자동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도 아니다.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오직 행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제도는 현존하는 제도를 정교화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함으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제도의 선택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4)</sup>

제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도의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등은 모두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형성과정도 정치적인 과정일 수 밖에 없다면 이는 곧 제도의 형성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자원의 불균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sup>55)</sup>

경로의존 설명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한다. 제도의 형성 과정이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제도의 변화과정 또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행위자들과 이를 변화시키려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려는 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제도는 경로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North<sup>56)</sup>도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역할과 권력관계를 대단히 중시한다. 제도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변화하며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누구의 신념체계에 기반 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의 인식에 기반해서 어떤 제도가 만들어 지는가를 결정한다. 갈등적인 신념이 존재할 경우, 제도는 자신들의 선택을 유효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신념을 반영한다. 제도가 변화되면 기존의 권력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제도는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다. 경로의존의 저항에 따라 제도는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다. 제도변화가 기존 이익을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면 현존하는 제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변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변화의 폭과 방향은 현재 제도의 수혜자들과 도전자들 간 권력자원이 어떻

---

54) Avner. Grief,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7-60.

55) “Lowndes Vivien, 전제서, pp.90-108.”

56) Douglas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게 배분되어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 라. 아이디어와 제도

사회과학에서 특정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디어만큼이나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사용된 개념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사실, 아이디어는 논자에 따라 가치에 대한 서술, 인간관계에 대한 서술,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책, 상징이나 이미지, 혹은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렇게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조차 논자에 따라 상이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에서 학문적 논쟁과 지식의 축적이 매우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와 유형 분류가 시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도로서는 Goldstein과 Keohane<sup>57)</sup>, Blyth<sup>58)</sup>, 그리고 Campbell<sup>59)</sup>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틀 짓기이다. 틀짓기(framing)는 정책이나 제도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Campbell<sup>60)</sup>은 아이디어의 한 유형으로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프레임을 아이디어로 보기는 어렵다.<sup>61)</sup> 대신 틀 짓기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정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쟁점을 유도함으로

---

57)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eohane, *Ideas and Foreign Policy: An Analytical Framework*,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3-30.

58) Mark M. Blyth, "Any More Bright Ideas? The Ideational Turn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Comparative Politics* 29, (1997), pp.229-250.

59)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in John L. Campbell and Ove K. Pedersen(eds.),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159-189.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Change and Glob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60) "John L. Campbell, 상계서, pp.159-189."

61) Beland(2005)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게끔 시도한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공의 정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주목하는 개념이 틀(frame)과 틀짓기(framing)이다

Bleich<sup>62)</sup>, Campbell<sup>63)</sup>은 프레임 혹은 틀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엘리트들이 활용하는 상징이나 개념을 의미하며, 틀 짓기란 정책적 쟁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이밍 개념에 주목한다는 것은 곧 아이디어가 ‘저기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나 정책과정 참여자들에 의해 부단히 각색되고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이디어의 형성, 변화, 확산 과정 그 자체가 의도적이며 전략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틀 짓기 개념에 주목하게 되면 제도적 틀 안에서 행위자 → 아이디어 → 제도변화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Ostrom<sup>64)</sup>이 주목하는 공유자원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유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인 일이지만,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는 집단 전체로 볼 때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이다.<sup>65)</sup>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제도이지만, 제도의 형성 그 자체가 집합행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 즉, 집합행동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집합행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만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 때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위자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확실성과 복잡성 하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와 행위를 조정해

---

62) Erik. Bleich, "Integrating Ideas into Policy-Making Analysis: Frames and Race Policies in Britain and Fra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 no.9,(2002), pp.1054-1076.

63) "John L. Campbell, 전계서, pp.159-189."

64)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1-120.

65) Mark M. Blyth, *Institutions and Ideas*, in the David Marsh and Gerry Stoker(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2nd e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p.302.

좁으로써 상황에 대한 공유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특정한 균형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이다.

## 5. 아이디어와 제도변화

아이디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상황의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봉착한 현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복잡한 현실에 대한 여과기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이다. 이른바 인식된 현실은 객관적 현실과는 다르다. 인식된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개인은 전략을 선택하고 행위의 방향을 정하기 마련인데, 이때 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혹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sup>66)</sup>

아이디어를 통해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탐색하게 된다. 제도변화를 추구할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제도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자들은 아이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sup>67)</sup> 즉, 아이디어에 기반 해서 제도의 요소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가 단지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구성 요소들의 재배열과 재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의 재결합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때 이러한 제도적 구성요소들을 재결합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제도변화에 대한 아이디어 영향력은 제도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

66) Douglas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60.

Douglass C. North,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p.5-80.

67) Siobhan. Harty, *Theorizing Institutional Change*, I Andre Lecours(ed.), 『*New Institutionalism: Theory and Analysi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p.66.

도입되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존하는 제도를 구성하고 있던 요소들을 재배열함으로써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sup>68)</sup>

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독립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제도변화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입되고 해석되고 확산되며 집행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맥락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는 종속변수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것이다.

## 제 2 절 제도와 사회발전

일반적으로 사회진화론은 진화와 자연도태를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시킨 이론을 말하기도 하며 한편 좁은 의미로 생물학적 추론에 입각한 기반위에서 사회적 인종적 불평등을 합리화 하는 이데올로기의 일종을 지칭하기도 한다<sup>69)</sup>. 본 연구에서의 진화론은 다윈의 이론을 사회현상의 이해에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지만 전개상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의 전개가 많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사회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서구에서 발생한 진화론이 중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일본의 진화론의 수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이론은 이승환의 한국 및 동양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가능(중국철학회, 중국철학 제9호)을 논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원래 논자가 구상했던 것은 사회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발전이란 지금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발전의 개념규정에서 몇 가

---

68) Neil. Bradford, "The Policy Influence of Economic Ideas: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novation in Canada,"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59, (1999), pp.20-21.

69)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127, no.1, (1993), p.406.

지 조류가 있는데 복지의 가치관에 입각한 발전의 개념은 소득증대, 보다 나은 사회보장, 더 많고 나은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이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인간생활의 조건을 향한 의식적 변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구에서 탄생한 사회진화론도 사회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에 인용하는 것이다.

## 1. 서구의 사회진화론의 탄생

사회진화론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극성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의 변종 이론이다. 원래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신념 아래 근대 시민계급을 종교적 억압과 신분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해방의 이념이었다. 자유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생겨난 이념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운영의 원리로 국가의 불간섭 즉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왔다. 자유주의는 성립 초기에 봉건적 신분차별과 종교적 억압을 철폐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함으로써 시민계급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계몽을 내세웠던 자유주의는 시민계급이 정치·경제·사회적 기득권을 확보하게 되는 18세기 중·후반부터 자기모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순은 자기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유주의 자신이 옹호했던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가리킨다. 사적 소유권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이미 확보하게 된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의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사회적 평등’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주의는 원리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사회에서 누가 정치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사회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슬그머니 ‘모든 사람’이라는 전칭명사를 폐기해 버리고 ‘부르주아 계급’이라는 특칭명사로 대체해 버렸다. 즉,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부르주아 계급만이 인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동자와 같은

하층계급은 비인격적이고 수동적인 시민으로 간주하게 되었다.<sup>70)</sup>

자유주의라는 이념을 표방했던 이 시기 영국의 법은 포악하기 그지없었으며, 투표권과 참정권도 극도로 불평등하게 인정되었다. 이 시기 자유주의 이론과 실체는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었으며, 재산권이 없는 자들은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산이 없는 자들은 독립성이 없고 남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평등이란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적용되는 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형식적 평등에 불과했다. 엄밀하게 말해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은 다수의 평등 대신 소수의 자유를 옹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적 평등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함으로써만 가능하며, 자유야말로 평등에서 우선하는 지고의 가치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자유주의의 모순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생산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더욱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본과 생산수단이 소수의 자본가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동자와 빈민층은 이에 저항하며 계급투쟁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기득권 부르주아 계급은 증대하는 노동계급의 저항에 불안을 느끼고 일체의 혁명적 움직임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계몽시기부터 간직해 온 진보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회의주의와 비관주의가 유럽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기득권 계급과 보수적 지식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을 합리화시켜주고 사회적 갈등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이론적 버팀목이 나타나기를 고대했고, 사회진화론은 바로 이러한 기득권 계급의 수요에 부응하여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71)</sup>

사회진화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은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되었고, 자본가의 착취와 대중의 빈곤은 ‘자연의 법칙’으로 정당화되었다. 한 예로, 멜더스는 인구론에서 자본주의적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실업·기아 등의 현상은 극히 당연한 자연법칙의 일부이므로 빈민구제와 사회복지 정책은 오히려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간 사회와 역사의 전개를 자연법칙으

---

70)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서울: 민음사, 1991), p.138.

71) 노명식, (전게서), p.145.

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당시의 과학주의적 태도는 실상 부르주아 계급의 자기방어 심리와 자기 정당화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으로부터 그 개념과 용어를 빌려왔지만, 다윈 자신이 자연법칙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1858)에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자연세계의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다윈의 진화론은 진보적인 지식인과 보수적인 지식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려던 보수적 지식인들은 다윈의 이론을 원용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는 자연의 법칙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였다.

사회진화론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은 미국의 섬너(William G. Sumner)와 영국의 스펜서(Herbert Spencer)라고 할 수 있다. 스펜서는 사회 정학과, 사회학 연구 그리고 사회학의 제 원리 등의 저서에서 ‘인간사회’와 ‘자연’은 동일한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인간사회는 생물의 발전 법칙과 마찬가지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통하여 저급의 단계에서 고급의 단계로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극단적인 방임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시장의 경쟁메커니즘은 생물학적 발전법칙과 마찬가지로 사회도태를 초래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생존경쟁→적자생존→자연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고도로 진화된 이상적 인간이 탄생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는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오자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빈민의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며 진보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철저한 방임주의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심지어 공교육·구빈법·공중위생법 등 사회복지에 관한 정부의 역할도 경쟁의 자유를 해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유주의적 경쟁체제로부터 야기되는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자연 법칙’으로 정당화하려는 사회진화론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고 기득권 계급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반동적 도그마가 되었다. 따라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자연법칙으로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이념체계이며, 인간 사회에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를 조장하는 반인도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오직 ‘강한 자의 권리’와 ‘가진 자의 자유’만이 있을 뿐, 손톱만큼의 인류애나 인간애는 찾아볼 수 없다. 인간 사회를 ‘동물의 왕국’의 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이러한 이념체계는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제국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독점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낳고, 생산의 집적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독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독점은 자본주의 생산체계에 고유한 부정성을 강화하고 심화시킨다. 그리하여 독점체와 독점체 사이의 경쟁 그리고 독점체와 비독점체 간의 경쟁은 더욱 첨예화되고, 자본의 일반법칙인 공황의 주기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의 단계에서는 막대한 과잉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증식시킬 목적으로 후진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자본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수출을 통하여 소수의 독점 자본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와 민중을 착취하며 그 위에 기생충으로 군림하게 된다.<sup>72)</sup>

제국주의는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진화론과 같은 의사 과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사회에서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이 필연적인 법칙이듯이, 인간사회에서도 능력있고 우월한 인종이 그렇지 못한 인종을 지배·정복·추방·예속·절멸시키는 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본 것이다. 기딩스(Franklin H. Giddings)나 키드(Benjamin Kidd)와 같은 영·미의 학자들은 인류의 다양한 인종 가운데 튜톤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앵글로-색슨족만이 최고로 능력있고 우월한 인종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인류의 진보는 종족간의 투쟁을 필요로 하는데 이 투쟁에서 약한 민족은 멸종하고 능률적인 인종은 살아서 반영한다. 우리는 능률적인 인종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영국의 로즈베리(Archibald Philip Rosebery)는 “영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이 위대한 선의 세속적 대리인”이라고 하였고, 챔버린(Chamberlain)은 “앵글로-색슨족은 세계의 역사와 문명에서 탁월한 힘을 가질 운명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듯이, 사회진화론에 편승한 인종주의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보조 이론이 되었다.<sup>73)</sup>

72) 박세영, 『라디미르 레닌, 제국주의론』 (서울: 과학과 사상사, 1988), 제7장 참조.

73) 신흥범·김종철, 『J. A. 홉슨, 제국주의론』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p.143.



인종주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똑같이 주장되었다. 독일어권에서는 고프로비치(Ludwig Gumplowicz)가 사회진화론을 학파로 구성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연’과 ‘사회’의 진행과정은 절대적으로 동일하고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절대 동일성’과 ‘질적 무차별성’의 전제에 입각하여, “인간사회의 불평등은 자연 법칙의 일부이며, 평등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볼트만(Woltmann)에게로 이어져 독일 제국주의의 전개 이념적 초석을 제공하였다. 볼트만은 “흑인이나 백인들은 언제나 식민지 지역에서 지배인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겼다.

프랑스에서 인종주의를 부추긴 사람은 고비노(Joseph Arthur Gobineau)를 들 수 있다. 그가 쓴 인종 불평등론은 자연과학적 엄밀성으로 분장한, 인간의 평등에 반대하는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저작물이다. 그는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인종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그는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을 세 가지 인종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백인 귀족은 지배에 적합한 인물이고, 백인 부르주아 계급은 지배인종에 가까운 혼합인종이며, 유색 혼혈인종은 피지배 계급이다.” 그는 인간의 원칙적 불평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도 거부했고, 인간의 이성마저도 부인했다. 그에겐 오직 백인종의 역사, 백인종의 진보만이 있을 뿐이었다. 인종주의는 제국주의적 압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써, 지구의 모든 인종을 ‘고가치’의 인종과 ‘저가치’의 인종으로 서열화하고 저가치의 인종이 고가치의 인종에게 종속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처럼 인종주의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과학적 용어로 합리화시킴으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백색인종의 유색인종에 대한 지배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sup>74)</sup>

## 2.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전개

74) “신홍범·김종철, 전개서, p.147.”

19세기 중반에 들어 서구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특징인 ‘팽창의 논리’에 따라 세계의 각 지역에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침략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은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왕조가 세관을 폐쇄하고 아편 매매금지령을 내리자,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1840-1842년의 2년여에 걸친 아편전쟁의 결과 중국은 영국에게 힘없이 패배하고 남경조약을 체결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해 주고 주권마저 제약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중국은 이어서 미국·프랑스 등 열강 제국과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고 반식민지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뒤이어 안으로는 태평천국의 난(1851-1864)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중일전쟁(1894-1895)에도 패배함에 따라 청왕조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 청왕조는 몰락하고 중화민국이 창립되었으나, 다시 황제가 되고자 했던 원세개와 혁명파의 격돌로 중국의 정세는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반식민지와 반봉건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생존과 부강을 위하여 ‘변법’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변법파의 주요 논객인 엄복은 헉슬리(Thomas H. Huxley)의 진화와 윤리(1893)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서구의 진화론을 소개하고,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거하여 중국인의 자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원래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교회 측의 반박에 대응하여 진화론을 옹호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 헉슬리의 관점은 스펜서의 관점과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즉, 스펜서는 진화론이 생물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임을 강조하며,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으로 전개되는 자본주의적 현실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헉슬리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단지 자연계에 적용될 뿐 인간사회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사회에는 선형적 도덕준칙이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욕망을 억제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하여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능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헉슬리는 스펜서의 자연주의적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능동적 노력을 중시하였다.

엄복은 진화와 윤리를 번역함에 있어서, 헉슬리의 관점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스펜서의 관점을 골격으로 삼아 의역을 하였다. 그는 진화를 천연(天演)으로, 생존

경쟁을 ‘물경(物競)으로, 적자생존 혹은 자연도태를 천택(天擇)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엄복에 따르면 ‘물경’이란 각 생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고, ‘천택’이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존재가 살아남는 것이다. 생명체들은 생존을 위하여 처음에는 종과 종이 싸우고, 나중에는 집단과 집단이 싸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에게 부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세에 자기의 종족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엄복의 번역이 보급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물경천택(物競天擇)’이 새로운 세계관을 설명해주는 용어로 부상하게 되었다.

엄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했지만, 당시 중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당분간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민을 계몽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소수 엘리트들의 노력이며, 아직 ‘민’이 지·덕·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국가가 구심점에 서서 국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엄복에게 있어서 ‘민’은 아직 개혁의 주체 혹은 경쟁의 주체가 되기에 미흡한 존재였으며, 단지 교화와 계몽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 엄복의 이러한 계몽주의적 개혁론은 당시 보수파와 혁명파의 두 진영 사이에서 개량주의적 입장으로 낙착되게 된다. 엄복은 무술변법(1898)이 좌절된 이후에는 급격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기울게 되었고, 그가 소개했던 사회진화론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논리가 아니라 혁명파에 반대하는 이론적 도구로 전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 심지어 혁명파의 민주혁명 사상이 진화의 자연스런 법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그가 고취했던 사회진화론은 진보적 의의를 상실하고 보수·반동 세력의 이념적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sup>75)</sup>

엄복과 더불어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의 확산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양계초이다. 그는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일본식 용어인 ‘우승열패(優勝劣敗)’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1898년 무술변법의 시도가 좌절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의 대표적 사회진화론자인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당시

75) 양일모, “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철학연구』 20, (1992), p.87.

세계의 주도적인 흐름을 루소의 '민약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양대 세력으로 보았다. 그는 민권과 계약을 강조하는 루소의 '민약론'은 민의를 중시하는 장점은 지니지만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로 빠져 국가 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으며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강조하는 스펜서의 진화론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은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침에 대항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양계초는 국가의 부강을 당면과제로 파악하는 엄복과 일본 학자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개인보다 국가를 중심에 놓으려는 국가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더불어 영국의 사회진화론자인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 그리고 스위스 법학자인 블룬칠리(Johann Kaspar Bluntschli)의 '사회 유기체설'을 적극 수용하게 된다.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엄복·양계초 등에 의해 수용되어 국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각성제로 작용하였으며, 생존을 위한 자강과 계몽을 고취시키는 활력소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서구에서와 달리, 중국에서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억압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로 되기 위한 필요성을 촉구해주는 자강의 담론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엄복·양계초 등에 의한 초기 수용단계에서는 진화의 주체를 '인민'이 아닌 '국가'로 상정함으로써 말미암아 민중들의 '민권'과 '자유'를 유보하고 말았다는 한계를 지니며, 아울러 제국주의적 침략의 논리를 분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말았다는 결함을 지닌다. 그러나 엄복과 양계초 이후 중국에서 진화론의 전개는 장병린·노신·이대조 등을 거치며, 진화의 주체가 점차 국가→민족→인민으로 변화해가면서 민중의 혁명을 가져왔다.

### 3. 일본에서 사회진화론의 전개

일본에 진화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동경대학 미국인 교수인 모스(Edward S. Morse)였다. 그는 1877-1879년 사이에 동경대학에서 동물학과 진화론을 강의했는데, 이시가와 치요마스(石川千代松)가 이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물진화론으로 펴

났다. 이와 더불어 1877-1886년까지 동경대학에서 철학·경제학·정치학을 강의하였던 페놀로사(Ernest F. Fenollosa)는 스펜서의 진화론적 사회학을 소개함으로써 진화론은 일본 사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준 것은 독일의 국가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0-1870)이래 국가중심의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기류는 독일 국가주의 철학과 노선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독일계통의 사회진화론이 환영받게 된 것이다. 독일의 사회진화론은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계급적·엘리트적 사회질서를 찬양하며, 민족 공동체를 유기적 전체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인종적 불평등과 계급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팽창적 민족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고, 이는 결국 독일 파시즘에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자는 카토 히로유키(加藤弘之)로서, 그는 국가를 개인의 위에 놓는 독일의 국가주의 철학을 주도적으로 일본에 보급시킨 거물급 관료 사상가였다. 그는 처음에는 진정대의와 국체신문등의 저작을 통하여 서양의 입헌제도와 천부인권론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인 국가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875년 이후 독일의 생물학·철학자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의 저작을 통해 진화론에 접하게 되면서 생각을 바꿔, 이전에 자신이 옹호하였던 천부인권설을 오견과 망설로 규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두 책을 절판시킨 후 인권신설을 새로이 저술하였다. 이 사건을 소위 “카토의 전향”이라고 부르는데, 이후로 그는 ‘강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절대주의 국가관의 일본의 대외 진출을 옹호하고, 말년에 가서는 입헌적 족부통치론(立憲的族父統治論)을 내세우며 천황을 향한 국민의 맹목적 충성심을 강요하였다.<sup>76)</sup>

카토가 사상적 전향을 할 무렵인 1870년대 중반의 메이지 정부는 보수적 기류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메이지 정부는 1875년 엄격한 언론법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계몽단체인 ‘명록사’의 해산을 강요하였다. 자유민권운동이 탄압 당하는 보수화의 물결 속에서 카토는 메이지 정부의 편에 서서 참정권과 자유를 주장하는 민권론자들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비판하고, 민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승열패’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확고한 국가체제가

76) 조경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문학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6) 참조.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확고한 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 서구 열강과의 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의 당면과제는 강력한 민족국가의 확립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강자의 경쟁과 권리 그리고 도덕과 법률 진화의 이치에서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를 인류 사회의 핵심법칙으로 천명하고, 세포로서의 개인은 전체로서의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강자의 권리란 강인한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유전과 적응에 의해 얻어진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권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강자의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에서는 항상 집단적 싸움이 개인간의 싸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유와 평등 대신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민족의 족부(族父)를 천황이라고 주장하며 일본민족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수주의로 흘러갔다.<sup>77)</sup>

강자의 권리만 인정하고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의 이론은 서구 제국주의의 사회진화론처럼 자연스럽게 인종주의와 조우하게 된다. 그는 인종들 간의 사회 · 문화적 차이는 인종들 간의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유럽 민족은 질적으로 고가치한 민족으로서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반면, 다른 인종들은 수동적이며 여성적이라고 보았다. 생존경쟁과 우승열패를 인간 사회의 자연스런 법칙으로 이해하는 카토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본의 팽창정책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문명화시켜 줄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과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소수의 문명화된 민족만이 전 지구의 지배자이며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이 그랬던 것처럼 강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약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

#### 4.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의 전개

오랫동안 중국과 사대관계를 맺고 한국은 1870년에 들어 일본에 의해 강제 개국

---

77) 윤건차,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 『역사비평』 (1996년 봄호), pp.319-320.

을 당하게 되었고, 개국이후 가속화된 제국주의의 침략과 더불어 한국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의 주변부로 편입되게 되었다. 전통사상인 유교는 급변하는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진보적 지식인들은 중국의 양무운동(洋務運動)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개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수용된 사회진화론이 개화운동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에서 개화라는 말은 개국직후 선진적 인사들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고, 1880년대에 들어서는 점차 대중화된 구호로 퍼지게 되었다. 개화사상은 중인 및 천인 출신의 신지식인들과 계몽적인 양반 자제들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이들이 참고로 한 것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중국의 양무운동이었다. 김윤식·김홍집·어윤중 등은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 한편으로 조선의 전통적 제도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기술과 산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옥균·서재필·윤치호 등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서구의 산업·기술 뿐 아니라 문화제도와 사상까지도 모조리 서구로부터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개화사상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유길준(1856-1914)은 개화의 당위성을 사회진화론에 근거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1881년 일본에 사절단으로 가서 경응의숙에 다니면서 후쿠자와유기치(福澤諭吉)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았으며, 1883년부터는 미국에 유학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둘러본 뒤 그 감상을 서유견문으로 펴냈다. 그는 ‘개화’를 “인간 세상의 온갖 사물들이 지극히 선하고도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후쿠자와 유기치와 마찬가지로 개화의 정도를 개화, 반개화, 미개화의 세 등급으로 나누고 당시 한국은 반개화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개화의 원동력을 사회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경쟁에서 찾았다. 그가 사회진화론을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시절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진화론에 관한 서적이 간행되어 널리 읽히고 있었다. 헉슬리(Thomas H. Huxley)의 Lectures on Origine of Species가 존원시론(生種原始論)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고, 다윈(Charles Darwin)의 The Descent of Men의 제 2판이 인조론(人祖

論)(1881)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동경대학에 초빙교수로 와 있던 모스(Edward S. Morse)의 강연으로 진화론이 지식층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가고 있었는데 유길준은 경쟁론이란 글에서 경쟁의 보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78)</sup>

무릇 인생의 만사는 경쟁에 의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큰 것은 천하 국가의 일로부터 작은 것은 일신·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보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생에 경쟁이 없으면 무엇으로써 지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가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무엇으로써 광위(光威)와 부강을 얻을 수 있으리오?<sup>79)</sup>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유길준은 경쟁이 개인의 국가의 부강을 실현하게 해주는 진보의 동력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도와 같이 오랜 역사와 광대한 국토를 지닌 나라가 영국에 멸망당하고 노예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인도가 일찍부터 외국과 교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열과 선후를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심지어 서로 경쟁할만한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국가는 곧 멸망하게 된다고 하여,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적국이나 외환과 같은 경쟁의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sup>80)</sup>

그러면 경쟁이란 무엇인가? 유길준에 의하면 경쟁이란, 각기 자기의 직분에 힘쓰며, 자기가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뜻한 바를 달성하고자 앞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sup>81)</sup>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경쟁은 약육강식에서 자연도태로 이어지는 무자비한 야수적 투쟁이 아니라, 진보에 대한 신념과 자유주의적 낙관론이 결합된 선의의 경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문명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탈을 정당화하던 당시의 제국주의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유길준은 한 나라가 부귀를 추구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무력과 전쟁으로 약소

---

78) 김봉렬, 『차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p.48.

79) 유길준, 『차길준 전서』, (서울: 일조각, 1971), pp.47-48.

80) “김봉렬, 전계서, p.58.”

81)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옮김(서울: 한양출판, 1995), p.131.



국을 침탈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이 이익과 영달을 취하도록 배려해주면서 자신도 이익과 영달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유길준은 근대 서양이 부귀를 취하는 방식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다. 즉, 유럽의 봉건시대에는 왕과 귀족들이 권세와 폭력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아 부귀영달을 이루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는 문명이 개화하고 민생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난폭한 악습은 사라지고 경쟁을 통하여 자신과 더불어 남의 이익까지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출현한 한국 최초의 사설신문으로서, “대한의 독립과 진보와 인민의 자유권을 위하여”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간되었다.<sup>82)</sup> <독립신문>의 주 멤버인 서재필과 윤치호는 수 차례의 논설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국민들에게 국제 정치의 현실을 알리고 국권확립을 위한 계몽을 부르짖었다. <독립신문>의 영문판인 The Independent에 실린 윤치호의 글을 통하여 당시에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자연과학은 약자와 우둔한 자는 항상 강자와 지적인 자의 노예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법칙에서 기인하는 결과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윤치호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서구 사회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달하고 있다. 윤치호의 이러한 논설은 ‘우승 열패’와 ‘적자생존’으로 이어지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만국의 오늘날 나타난 현상을 불진대, 동맹국이니 통상국이니 하나, 실상은 한 나라가 눈이 없는 즉 그 코를 베어먹을 판국이라 그러하나 이는 인간의 자연한 형체라.<sup>83)</sup>

독립신문의 논설에서는 또한 서구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인종주의마저도 그대

---

82) 독립신문, 1899.4.7. 논설.

83) 독립신문, 1898. 1. 22. 논설.(그리고 광무 2년 4. 7. 논설을 보면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로 답습하여 소개하고 있다. 즉, 독립신문의 여러 논설에서는 지구상의 인종을 피부색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몽고족은 황인, 코가사족은 백인, 아프리카인은 흑인, 말레이인은 황적색인, 아메리카인은 홍인 등으로 분류하고 백인을 가장 영민하고 부지런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황인종 가운데서도 청국인을 세계에서 제일 천하고 약한 인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서구의 사회진화론에서는 엿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국인에 대한 독립신문의 이러한 평가는, 한국이 일본이나 서구의 침략으로 받는 위협보다는 과거 청국에 의해 당해왔던 피해와 예속을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는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의 언론에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래 군·관·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30여년의 개혁을 통해 개화국으로 진입한 모범적 국가로 그려지는 반면, 청국은 그 반대이거나 심지어 적개심과 경멸감을 불러일으키는 국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sup>84)</sup>

개화와 계몽을 주장하는 독립신문의 논조에는 서양인들이 지니고 있는 정복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편견에 대해서도 아무런 비판이나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치호는 서구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세계는 정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보았으며, 힘이 곧 정의고 나아가 세계의 신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명화된 민족이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을 정복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강자에게 정의와 성공을 가져다주고 약자들에게는 부정의와 실패를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영국은 인도와 모든 종속국의 스승이다. 이것은 미국의 흑인 및 인디언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로이다. ‘모든 인종이 궁극적 개선은 신의 섭리이다’ 라고 주장하며 영·미의 인종주의와 식민지주의를 두둔하였다. 그는 심지어 강국이 식민지를 훈육시키느라 자행하는 착취와 범죄 행위마저도 진화의 법칙상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옹호하였다.

윤치호는 당시 우리나라와 같이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가 문명화된 나라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선진 문명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길밖

---

84) 이와 관련해서는 <독립신문> 건양원년 8월 4일자 논설, 광무 2년 4월 7일자 논설, 광무 2년 11월 11일자 논설, 그리고 광무 2년 12월 6일자 논설을 각기 참조.

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밀려오던 외세 앞에서 한국이 생존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자, 윤치호는 폭정과 가난에 시달리는 한국민을 위해서는 한국이 문명화된 외국정부에 의해서라도 지배되거나 문명화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sup>85)</sup>

윤치호의 이러한 관점은 당시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진해서 제국주의의 논리에 세뇌되어가던 자칭 선진적 지식인들의 몰주체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대변해준다. 당시에는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자처했던 윤치호였지만, 사회진화론의 논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스스로 제국주의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국 근대사의 서글픈 단면을 엿 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 논설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들 신지식인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탓으로 암암리에 서구 중심적 사고가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윤치호는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일본 동지사학교를 다녔고, 1884년에서 갑신정변 전까지는 미국 외교관 푸트(Lucius H. Foot)의 통역관으로 일했으며, 갑신정변 후인 1885년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영중학원에 다녔다. 그는 1888년 미국으로 건너가 벤더빌트 대학에서 신학을 배우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영중학원에서 영어선생을 하다가 1895년 한국으로 돌아왔다.<sup>86)</sup>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문명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독립보다 외세에 의존해서라도 문명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신학도였던 윤치호는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의 문명화에 중대한 기여를 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기독교는 한국의 구제이며 희망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제국주의적 침략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정복주의적 선교방식에 대한 당시 지식인의 무지와, 서구 중심적 문명화에 대한 몰주체적이고 맹목적인 열광을 엿볼 수 있다.

윤치호를 비롯한 독립신문의 논설자들에게 대중과 지식인들이 모두 다 동조했던

---

85) 국사편찬위원회 편, Yun Cbi-Ho's Diary Vol.Ⅱ (1890), p.130.

86) <독립신문> 의 논조에 대해 비판한 대표적인 연구로 려증동 지음, 『附倭逆賊 기관지 독립신문 연구』가 있다.

것은 아니다. 황현 같은 우국지사는 서재필의 서양식 흉내 내기에 심각한 분노를 표하고, 문명화란 이름 아래 식민지주의에 자발적으로 매몰되어 가는 신지식인의 모습을 통탄하기도 했다. 매천은 이렇게 서재필을 꾸짖는다.

서재필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의 부인과 부득이하게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도 미국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갑오년에 귀국해서 고종 황제를 뵈 때에는 자신을 미국 시민으로 자처했고, 안경 끼고 담배를 입에 문 채 뒷짐을 지고 조정에 나아갔으니, 애통하고 분하도다! 이 같은 작자가 어찌 하늘의 도리를 안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1890년대에 독립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포된 사회진화론은 국제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던 약육강식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적 수단이 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 근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각성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을 유포한 지식인들 자신이 제국주의의 폭력적 성격에 대해 냉철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였던 점은 아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적 인사로 자처하던 이들 지식인은 심지어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에 들러리를 서거나 구미의 강권적 문명화의 요구에 몰주체적으로 복종함으로써, 훗날 한국의 근대화가 모방적 근대화의 길을 걷게 만든 이념적 선구가 되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회진화론은 자유주의의 자기모순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이론이다. 사회진화론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갈등이 첨예화하고 독점 자본주의가 해외를 향하여 침략의 손길을 뻗치던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반동적인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이론은 이미 충분히 자본을 축적한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계급·인종·민족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힘없는 자의 패배·종속·절멸을 자연법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론체계였다.

이러한 이론이 지닌 약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첫째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자연의 이름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유적 존재로서의 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야수적인 이념체계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사회 발전의 법칙을 동물세계의 진화 법칙에 비유함으로써, 능동적·주체적·

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버리는 동물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회진화론이 지닌 두 번째 약점은 좀 더 철학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사실’과 ‘가치’의 문제를 혼동하는 자연주의의 오류에 빠졌다는 점이다. 침략과 지배 그리고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야수적 인간에 대한 묘사는 사실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좀 더 바람직한 인간상과 사회상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의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진화론자들은 사실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혹은 사실의 문제로 가치의 문제를 소멸시키면서, 교묘하게 사실의 문제를 가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호도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결점을 지닌 사회진화론을 한국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앞장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적 약육강식의 현실에 대처하고 국가 민족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수단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할 때, 자국 내 국민 개개인 사이의 경쟁 대신 국가 대 국가 혹은 민족 대 민족의 생존 경쟁을 강조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구에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약육강식적 수탈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던 사회진화론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약자인 한국이 강자의 발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능동적 행동을 고취시키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원래 사회진화론이 지닌 여러 요소 가운데 특정한 측면들만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어 원래의 모습과는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게 된 것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한국에 전래된 사회진화론은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사회진화론이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을 위해 필요한 계몽운동과 실력양성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를 자연법칙으로 승인함으로써 말미암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자발적으로 정당화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에 의해 각색된 사회진화론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백인종과 황인종의 인종다툼으로 보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황인종의 단결을 주장하였던 바, 개화파 지

식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한국 침략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사회진화론이 유행했던 제국주의의 극성기로부터 1백 여 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사회진화론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진화론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외투를 걸치고,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훈장을 달고서, 이 시대의 진리로 자처하며, 또다시 인류를 약육강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대부인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76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은 사회진화론의 맥을 잇는 이론적 대부들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내부 동인에서 야기되는 독점 자본주의의 또 다른 형태이지만, 지금은 정치·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교육·환경·의료·복지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 진리를 자처하며 위세를 부리고 있다.

자유 그 자체는 고귀하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난 1백 여 년 전에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 사회진화론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이러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유주의의 변용된 한 갈래일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충족시켜 주는 이념은 아니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재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바로 그 자유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국내·국제 사회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다. 과연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자유주의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인가? 과연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자유주의의 모순은 지난 1백년 전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자유주의의 모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자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 자체 내에 간직된 자기 모순을 새삼스럽게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제 4 장 법인세법의 진화

### 제 1 절 연구의 모델

원래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존재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스펜서는 국가의 의무를 정의의 관리로 한정하기도 한다. 즉 국가의 의무는 보호하는 것, 동일자유의 법칙을 시행하고 사람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정의를 관리한 것이다<sup>87)</sup>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는 국가존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소유하거나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서 세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징수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한다. 현대국가는 이러한 조세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은 국민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는 규정도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동시에 자칫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문의 형식을 취함이 원칙이며 그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세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그 자체 통일적인 법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을 비롯하여 국세와 관련된 세법과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으로

---

87) 정창인, “스펜서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정치사상』 3, (1999), p.6.

조세법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국세에 해당되는 법인세는 기업의 수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징수하는 조세인데 이를 징수하기 위한 법이 법인세법이다. 법인세법은 194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법인세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법인조직을 제대로 갖춘 법인의 수가 적었을 뿐 만 아니라 법인이 부담했던 세수도 적어서 재정규모 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를 지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정책의 효과로 법인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지금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가경제의 3주체를 국가 기업 가계라고 하는데 이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이 제정되던 1949년에 법인세가 국세 중에서 차지한 비중은 1.4%로 극히 낮은 비중이었지만 2005년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국가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경제정책 조정의 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에 대한 최초의 과세는 1916년 8월이었으며 1920년 조선소득세령에 의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를 창설하면서 법인소득을 제1종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를 창설하여 금융조합과 공업조합 및 동 연합회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8.15광복 후에는 미군정법령에 의거 일본의 전시세제를 이어 받아 일본의 전시세제가 그대로 시행되다가<sup>88)</sup>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 62호로 법인세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인세법이 제정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경제정책은 어떠한 방향이었으며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제정된 법인세법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인세법은 오늘날 어떠한 양태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양태가 있기 까지 그 양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시대적 배경이나 경제정책이 조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88) 최광·현진권, 『한국조세정책50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7), pp.399-401.



필요없는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세법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며 사회적 특성을 새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즉 조세법이나 사회환경은 서로 독립변수가 되기도 하고 종속변수가 되기도 하면서 진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세제사적 측면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구분은 구분의 기준에 따라 또는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무부 편찬의 한국세제사와 최광, 현진권의 한국조세정책50년사를 참고하고자 한다. 한국세제사 상권(재무부, 1979.12.29)에 의하면 세제의 발전 단계를 1.한말의 세제(1910년 이전) 2.일정하의 세제(1910-45) 3.미군정기의 세제(1945-48) 4.정부수립 및 동란기의 세제(1949-53) 5.동란 후 수복기 세제(1954-60) 6.경제개발기의 세제(1961-66) 7.경제성장기의 세제(1967-73) 8.최근의 세제(1974-이후)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광·현진권의 한국조세정책50년은 조세정책을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광복이후 1950년대까지) 2.경제개발 초기의 조세정책(1960년대) 3.고도성장기의 조세정책(1970년대) 4.안정기조하의 조세정책(1980년대) 5.경제정의를 위한 조세정책(1990년 이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미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시대의 구분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학자에 따라 또는 논자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분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류가 어떻든 어느 분류에 의하든 법인세법이 제정된 1949년을 중심으로 한 전후의 사회적 배경과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던 법인세법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로부터 57년이 지난 2006년의 법인세법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제도는 어떤 변화를 겪었으며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어온 것이 있다면 그 제도적 특성은 무엇인가? 법인세제도는 어떻게 형성되거나 제도화되고 개선 지속되어 왔는가? 지속되거나 변화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진화론적 접근을 하려고 한다. 진화론적 시각은 제도나 행동을 과거로부터의 변화과정에 관심을 두고 특정한 제도나 행동이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 유지되는가를 선별과정의 결과로 설명하여 왔다. 제도나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진화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제도나 시스템이 한꺼번에 변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함으로써 과거로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 속에서도 어떤 속성을 담지하는 인자와 그 속성이 변화되는 요인을 구분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즉 법인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진화되어 오면서 제정당시의 내용 중에서 어떤 요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 요소를 불변요소라고 명명하고 환경의 변화 또는 학습효과나 법인세법 자체의 필요에 따라 변하였거나 없어지고 또는 새로 생겨난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가변요소라고 명명하자. 불변요소는 어떠한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계승 또는 진이되는 것이며 가변요소는 환경의 변화나 학습효과 또는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화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 다윈의 진화는 자연선택 즉 돌연변이를 주제어로 삼고 있지만 사회과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화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에서의 진화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사회과학에서는 진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확실치 않다고 보는 것이 논자의 견해이다. 사회과학에서의 진화는 자연과학에서처럼 돌연변이의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나 교육에 의하여 현재 보다 개선되어가는 과정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변화, 발전 또는 개정이라는 단어도 진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같은 진화개념 및 특징분석을 통해 복잡한 실제 현상을 분석하며, 다양한 사회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진화론적 시각은 전체론(holism)적 입장을 취하며, 진화론적 특징으로 초기조건에 민감한 경로의존성, 적응과 학습결과 나타나는 변이와 요동, 창발성(emergence), 내생적(endogenous) 변화와 혁신, 제한된 합리성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각 특징은 서로 결합되어 동시에 나타나며, 단 하나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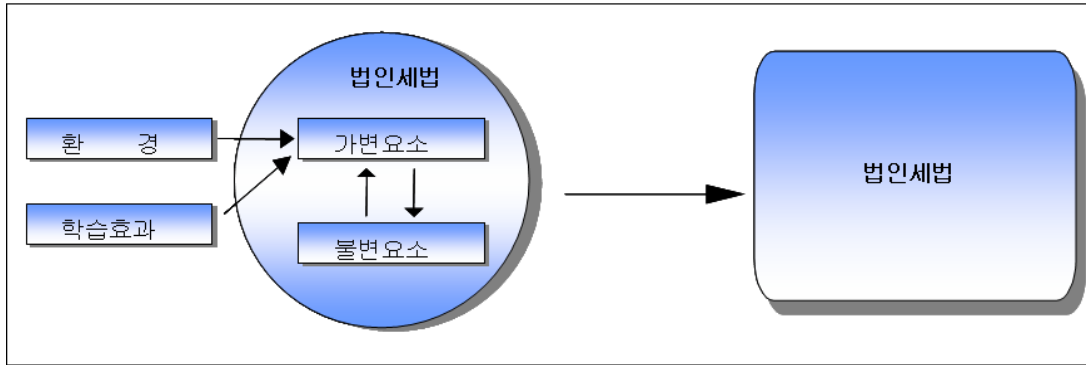
〈표 4-1〉 진화적 특성의 개념과 범주화<sup>89)</sup>

		개념 및 범주화
진화개념		- 상속성(heredity), 지속성(continuity)+차이(variation), 변이(mutation), 변화(change)
진화적 특성	경로의존성	- 제도의 유지와 초기에 선택된 제도와 정책의 지속성을 설명
	적응(adaptation)과 변이(variation)	- 시간에 따라 제도나 정책의 차이가 생기는 현상(variation)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학습, 적응해 나가는 과정(adaptation & learning) - 유전적 변이(mutation)와 일시적 변이인 요동(fluctuation)
	창발성과 비결정주의	- 예기치 않은 조직화나 구조화 형태의 출현(창발성) - 우연성, 임의성(random)을 포함하는 예측할 수 없는 자생적인 질성(비결정주의)
	제한된 합리성	- 대부분 규칙(rule), 규범(norms), 제도 등에 의해 제한 - 경험과 선별적인 시행착오에 의존 - 상징과 사후적 정당성 활용
	내생적 혁신과 변이	- 단지 외생적으로 주어진 환경이 아닌 체제내의 행태에 각인된 영향으로 혁신과 변이 발생 - 각국의 고유한 제도적 특성과 경험, 관례에 의존

법인세법이라는 제도가 처음 탄생하여 진화하는데 있어서 불변요소는 무엇이며 가변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세법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화하는데 있어서 법인세법이라는 틀을 유지하게 하는 불변요소가 있을 것이며 환경에 순응하거나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없어져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생겨난 가변요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9) 성지은, “지방재정진화과정분석,” 『지방행정연구』, 19 no.1, (2005), p.248.

<그림 4-1> 법인세법의 진화



## 제 2 절 법인세법의 탄생

한국세제사의 분류에 의하면 법인세법이 제정된 1949년을 정부수립 및 동란기로 기술하고 있으며 광태원의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연구<sup>90)</sup>는 국가 및 경제 재건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 기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전쟁에 의한 경제의 피해로부터 재건과 복흥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경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특성을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재정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인세법의 양태를 살펴보자.

### 1. 사회적 특성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북분단으로 우리는 정치적·사회적인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남북분단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혼란의 일차적인 수습은 미 군정당국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 후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점차 질서가 정착되기 시작함으로써 좀 더 장기적인 발전이 모색될 수 있었다. 이

90) 광태원,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7), p.29.

러한 때에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으로 다시 한반도는 엄청난 전화에 휘말려들게 되었고 그 시련은 3년이나 지속되었다. 엄청난 인명살상과 파괴만 남긴 채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본격적인 국가재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휴전 이후 1950년대의 기간은 일제치하에서 입은 깊은 상처와 남북분단 및 동족상잔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파괴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투입된 기간이었다. 물론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절대빈곤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노력의 절대적 크거나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한국경제가 1960년대 이후의 조약(도약)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격동의 기간 동안 정책여건이 극심한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또한 근대적 조세제도의 운영경험이 부족한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조세정책이 수립되고 운용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파행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조세제도의 발전과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단히 경주되었다고 판단되며 또 그러한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격동기에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를 조세정책으로써 대응하였고 또 이러한 변화에 조세제도가 스스로 적응해 온 모습도 발견된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는 15년 정도의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몇 개의 기간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해방 직후 약 3년 동안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은 국가건립의 진통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던 시기이고 특히 통치권이 미국 군정당국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기와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 기간을 군정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건국에서 한국전쟁 발발까지의 짧은 기간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등의 원조에 심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 이 기간을 건국초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어지는 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소련과 중국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집단의 남침으로 한반도 전역이 엄청난 전화에 휘말려 들었고 유엔군과 중공군 등까지 합세하여 엄청난 병력과 화력이 투입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유린되었다. 이 기간을

전란기로 부른다.

1950년대의 나머지 기간은 전쟁피해로부터의 복구와 경제사회의 재건에 힘을 기울인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우리 경제·사회는 조금씩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해 가고 있었다. 이 기간을 복구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 2. 경제적 특성

군정기(1945~1948)의 재정<sup>91)</sup>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과 함께 제2차세계대전은 종결되었고 우리나라는 日本의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38도선에 의한 남북의 분단으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남한은 점령군인 미군에 의하여 군정체제로 통치되었으나 정치적·사회적 혼란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속되었다.

남한경제는 일본경제로부터의 분리와 남북분단이라는 두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해방 전까지 한국경제는 일본에 예속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 내의 산업시설도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일본인 경영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 경영자나 기술자들이 긴급히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남아 있던 산업시설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의 패망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시의 한국 기업들에는 원료, 부품, 자본재 등의 공급 중단과 제품의 판로상실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안겨 주는 것이었다.

남북의 분단으로 한국의 산업은 더욱 마비되었고 특히 남한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주요 지하자원은 주로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었으며 전력도 북한에서 90%이상 생산되고 있었다.

---

91) 김기태외2인, 『한국재정론』 (서울: 법문사), pp.72-75.

〈표 4-2〉 해방 전 남북간 산업 비교

(단위:%)

구 분		남 한	북 한	합 계
지하자원	금 은 광	27.3	72.7	100.0
	철 광	0.1	99.9	100.0
	유 연 탄	0.5	99.5	100.0
	무 연 탄	2.3	97.7	100.0
	흑 연	29.0	71.0	100.0
공업생산액	화 학	18.2	81.8	100.0
	금 속	9.9	91.1	100.0
	기 계	72.2	27.8	100.0
	요 업	20.3	79.7	100.0
	방 적	84.9	15.1	100.0
	식 품	65.1	34.9	100.0
전 력	기 타	47.2	52.8	100.0
	출 력	14.0	86.0	100.0
	평균발전	8.0	92.0	100.0

주 : 지하자원은 1936년 현재, 공산품 생산은 1940년 현재, 그리고 전력은 해방 직전의 상황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1986), p.751에서 재인용.

〈표 4-2〉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잘 요약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면 화학이나 금속, 요업 등 원료공업은 북한지역에 주로 입지하고 있었지만, 경공업은 대부분 남한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의 철수에 의한 타격과 에너지 등 주요 자원의 공급원이던 북한과의 분리 등으로 남한경제가 받게 된 타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를 혼란에 빠지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통화의 남발과 이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 일제 말기에는 전비조달을 위해 통화를 남발하였어도 통제경제체제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억압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과거부터 누적되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빠르게 현재화되었다. 거기에다가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예금인출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통화남발이 이루어

졌으며 미군의 남한진주와 조선은행의 접수가 늦어짐에 따라 이러한 통화남발의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다.<sup>92)</sup> 해방 전부터 잠재되어 온 막대한 인플레이션 요인과 해방 직후의 통화남발 그리고 해방 뒤의 생산부진에 의한 공급부족과 사회·정치적 불안요인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1944년 대비 1946년의 도매물가지수는 약 92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군정당국은 물가의 안정을 위해 생필품의 가격통제로 시장가격을 억압하려고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통화의 증발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산업의 부진을 수반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업도 함께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지역의 공산화와 함께 수많은 난민들이 월남하고 또 일본이나 만주 등 해외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동포들의 수도 늘어서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sup>93)</sup> 한편 인구의 급증은 식량의 부족을 야기하였다. 이 기간 중에 양곡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좌우익간의 사상대결과 여러 정파들간의 정권투쟁 등이 혼합되어 사회분위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인 데다가 인플레이션과 실업 등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경제의 침체 등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국 초 우리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 받아 정부조직을 새롭게 정비 편성하는 한편 국방강화와 치안확보 파행적인 경제제도의 청산 인플레이션 수습에 의한 경제안정화 및 점진적인 산업재건 등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증산 생활필수품의 자급자족 동력자원의 확보 교통체신시설의 복구 물가통제정책의 수립 무역관리정책의 확립 토지개혁의 단행 노동조건 개선

92) 김병주(1995), p.72참조. 이 논문에 의하면 1945년 8월 14일 현재의 화폐발행고는 48억 4천만원이었으나 동월 말에는 79억 9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9월말에는 86억 8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미군에 의한 조선은행 접수 후 안정되어 동년 말에는 87억 6천만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1956년에는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화폐발행이 다시 크게 늘어 1946년 말에는 화폐발행고가 177억 1천만원에 달하게 되었다.

93) 1946-1948년간의 월남민 및 해외귀환 동포의 수는 약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광석·김준경(1995), p.31 참조. 1944년 5월 초의 총독부 국세조사에 의한 남한 인구는 1,587만 9천명으로 추정되었으나 1946년의 미 군정청 추정치는 1,936만 9천명에 달한다. 한국은행(1996), p.6.



및 사회보험제도의 수립 식량수집 실시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귀속 재산의 처리와 합리적 운영방안의 수립 산업단체의 정비 대일배상의 강력한 추진 그리고 실업대책과 재해복구대책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어 1948년 12월 10일에는 한미간의 경제원조협정이 체결되어 우리정부의 재정적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지출의 절약과 수입의 증가에 의한 예산의 균형 통화발행 및 신용의 통제 무역통제의 실시 환율의 제정 양곡수집과 적정한 배급 외국자본의 도입 수출산업의 발전 정부소유생산시설과 자산의 합리적 운용 및 처리 등 8개원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이르러 새 회계연도(4월1일)가 개시되기에 앞서 토지개혁법안 협동조합법안 각종 세법개정안에 관한 정부안이 마련되고 물건의 수송계획 물가정책기본요강 교통 통신 항만시설의 점진적 정비 재해지복구대책 산업개발정책 각종 생산계획 등의 계획을 만들었으며 그 밖에 귀속재산처리방침의 결정 한일 통상협정의 체결 등이 이루어져 1949년의 새 회계연도부터는 산업재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수립 후 정부의 기구와 조직이 확립되고 경제재건을 위한 각종 시책이 구체화 되어 추진되기 시작한데 힘입어 해방이후 극도에 달하였던 경제혼란이 전반적으로 수습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안정화 추세는 급변한 통화공급의 팽창이나 물가상승이 현저하게 둔화 된 것이나 수출입의 축소균형 그리고 주요한 물자의 생산 증대에 반영되었다.

통화량과 물가지수의 변동을 보면 재정적자의 누증으로 통화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주요물자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 간 폭등세를 보여 왔던 물가는 1949년에는 등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미군정 하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은 주로 미군정 당국이나 과도정부에 의한 정부무역으로 운영되어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보였으나 1946년에는 정부무역에 의한 수입이 전무하여 축소균형이 이루어졌었다.

정부수립 후 주요물자의 생산도 점차 회복되어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물자의 생산은 1949년에 1946년 대비 3배이상으로 늘어나고 1948년에 비해서도 41.5%에 달하는 순증가

를 기록하였다.

군정과도기에 미국은 경제혼란에 대처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에 의하여 다량의 식량과 비료 피복 통신용 보수기자재 및 기타 공공서비스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물자를 원조하였다. 정부수립 후에도 원조협정에 따라 종전과 같은 구호위주의 원조계획을 연장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9년 7월부터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원조계획을 결부시켜 자립경제로 발전시키는데 꼭 기여하도록 한다는 미국의 원조계획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3개년간의 원조계획으로 부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재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 3. 재정적 특성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체제로부터 한국의 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산설비는 유폐상태로 있었으며 일제 말 통제경제체제 하에 있었던 인플레이가 극심하여 경제적 불안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에 진주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군정을 실시한 미군정 당국은 일제하의 재정체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채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였다. 미군정 동안의 예산은 처음부터 적자로 편성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는 계속 확대되었다. 이 적자재정의 누적과정과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군정하의 재정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세출구조를 보면 미군정하의 재정은 일제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업과 국내 치안에 치중하였다. 세입을 늘리기 위하여 전매 운수 체신사업 등 각종 관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업비는 미군정기간동안 총세출 예산의 평균 4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비중이 큰 재정지출항목이 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해방후 국토양단 미소내전의 진전 국내 좌우익간의 사상투쟁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치안유지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에서 치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6년의 20.2%에서 1948년에는 25.6%로 증가하였다.

세입의 경우 관업 및 관유재산수입이 세입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한데 대해 조

세수입은 극히 부진하였다. 조세수입 부진의 이유로는 해방직후의 경제적 혼란과 생산의 위축에 따라 세원으로서의 국민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재산이동이 빈번하여 세원포착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과도한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한 것과 미군정의 조세행정력이 극히 미약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매년 가속화된 인플레이에 따른 세출의 팽창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파탄에 따른 조세수입 등 세입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 재정적자의 규모 및 비중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속 증가되었다.

재정적자 외에 양곡수집을 위한 막대한 자금의 방출도 미군정 하에서 인플레이를 심화시킨 재정상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군정이 1945년 10월에 일제말의 미곡배급제도를 폐지하고 미곡자유시장을 개설하였으나 인플레이가 급진전 함에, 따라 미곡의 매점매석 경향이 나타나 식량위기가 발생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1946년 1월에 미곡자유시장을 철폐하고 미곡수집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에는 생활필수품 중에서 9종을 골라 가격통제를 실시하였고 1947년 10월에는 미곡판매운반금지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였지만 일시에 대량 방출된 양곡수집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인플레이는 계속 심화되었다.<sup>94)</sup>

#### 4. 법인세법의 구조와 내용

법인세법은 형식적 또는 좁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는 법률인 법인세법 만을 말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주로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법규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을 넓은 의미 또는 실질적으로 정의한다면 법인세에 관한 법규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인세의 부과 징수 구제 소멸에 관한 모든 법규를 포함시키는 말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위임법규인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조세총칙법 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 중 법인세의 부과 징수 구제 소멸에 관한 규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인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

94)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1945-1955)』, p. 472참조.

례제한법과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손금 불산입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법,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등 소득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 광의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sup>95)</sup>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법인세법의 진화를 논하고자 한다.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그 구조와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법인세법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겠지만 1949년의 법인세법의 구조와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신규제정이유<sup>96)</sup>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선소득령에세 제1종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등의 제정없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만으로 구성되었다.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등으로 그 신규 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sup>97)</sup>.

95) 이준규, 『법인세법』 (서울: 세학사, 2000), pp.23-24.

96) <http://www.moleg.go.kr/>(법제처)

97)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법인세법에 무엇을 규정하여 놓고 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정해놓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어떠한 경우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세요건을 설명할 때에 7분설 5분설 4분설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일반론은 4분설이다.<sup>98)</sup> 한편 누가 얼마의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보자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법인세법은 과세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949년의 법인세법은 부칙 포함 총 46조로 구성되어있고 법인세법시행령은 부칙 포함 총 39조로 구성되어있다. 법인세법의 구성을 형식요건에서 보자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2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6조의 법인세법은

- ㉠ 납세의무자: 제1조, 9조,10조,12조,18조,
- ㉡ 과세대상: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제11조,제13조,제15조,
- ㉢ 과세표준: 제4조,제14조,
- ㉣ 세율: 제16조,제17조
- ㉤ 나머지 조문은 납세의무의 확정이나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았다.

법인세법시행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해년마다 진화를 조금씩 거듭하지만 커다란 변화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 823호로 폐지제정된 법인세법과 1967년 11월 29일 법률 제 1964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 그리고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 5581호로 전부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진화를 거친 법인세법이 2006년의 세법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1949년의 법인세법이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제정당시의 요소 중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불변요소는 무엇이고 환경이나 학습효과에 따라 변한 가변요소는 무엇인가를 보자.

98) 최명근, 『세법학총론』, (서울: 세경사, 2003), pp.209-210.

### 제 3 절 법인세법의 진화

법인세법의 진화를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관찰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의 구조를 국회에서 정한 법인세법 그리고 대통령한테 위임하여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3가지를 가지고 형식적 구조를 논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내용을 어떻게 담았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 구조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형식적 구조와 실질적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형식적 구조의 변화와 실질적 구조의 변화를 보기로 하는데 실질적 구조의 변화는 구조내의 변화로 대체하여 보기로 한다.

#### 1. 형식적 구조 변화

여기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49년의 제정당시에는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 입법상의 미비인지 아니면 부령으로 기술할 내용이 없을 만큼 사회환경 또는 기업환경이 단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1950년의 개정 시부터는 시행규칙도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형식구조상으로 본다면 구조변화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보고 법률구조만 분석하기로 한다.

〈표 4-3〉 법인세법의 형식적 구조변화<sup>99)</sup>

	1949년	1961년	1967년	1998년
법 른	39조	6장 45조	5장 70조	6장 122조
시 행 령	33조	52조	123조	6장 165조
시행규칙		5장 38조	65조	6장 82조

99) 2006년의 법인세법구조는 1998년의 구조와 큰 차이가 없어 구성상 나타내지 않았음.

〈표 4-4〉 법인세법의 형식적 구조변화

1949년 법인세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2호		1961년 법인세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23호		1967년 법인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64호		1998년 법인세법 전문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 납세의무	제1장 총칙	제1조 납세의무자	제1장 총칙	제1조 납세의무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제1장 총칙
제2조 과세소득		제2조 과세소득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조 납세의무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 과세표준		제3조 실질과세		제3조 과세소득 범위	
제4조 각 사업연도 소득		제4조 비과세법인		제4조 신탁소득		제4조 실질과세	
제5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제5조 과세방법		제5조 사업연도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청산소득		제6조 비과세소득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법인의 사업연도		제7조 신탁소득의 과세방법		제7조 납세지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적립금		제8조 합동운용신탁의 의의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합병법인의 법인세						제9조 납세지	
제10조 법인세 부과 면제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감면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						제12조 납세관할	
제13조 국제이자	제2장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조 과세표준	제2장 납세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관 통칙 제13조 과세표준	제1절 납세표준과 그 계산
제14조 조선은행법규정에 의한 법인의 손금산입		제10조 각사업연도 소득계산방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 청산소득		제11조 배당과 분배의 간주		제10조 비과세소득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세액		제12조 신탁소득의 계산방법		제11조 면제소득		제16조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동족회사		제13조 청산소득의 계산방법		제12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7조 자본거래 수익 익금불산입	
제18조 재무제표, 계산서의 첨부 소득금액 신고		제14조 해산, 합병법인 사업연도		제13조 퇴직급여 총당금의 손금산입		제18조 평가차익 등 익금불산입	
제19조 소득 신고서와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세율 적용 납부		제15조 청산소득 금액 과세배제		제14조 대손총당금의 손금산입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		제16조 적립금		제15조 익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 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7조 예납기간		제16조 손금불산입		제21조 제세공과금 손금불산입	
		제18조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익의 손금불산입	
	제19조 세율	제18조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공무원의 질문 조사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24조 기탁금의 손금불산입
제22조	공무원 일체의 장부에 대해 조사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3조	소득금액 결정과 세액가산				제21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칙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4조	납세의 무의이의 신청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손금불산입
제25조	이의 청구에 대한 조사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6조	사업연도								제29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7조	재해손실 면제								제30조 책임준비금 등 손금산입
제28조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제31조 계약자배당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	해산시 경감 면제에 관한 처분								제32조 증권거래 준비금 손금산입
제30조	해산시 법인세, 청산소득								제33조 퇴직급여 총당금 손금산입
제31조	납세지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2조	납세관리인								제35조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3조	동족회사 특수관계인 소득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4조	정부조사부가 가산세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5조	허위, 부정행위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제36조	공무원 질문 조사에 불응 허위진술에 벌금, 과료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환액의 손금산입
제37조	법인 소득조사자 기밀누설								제40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
제38조	공공단체의 부가세 면제								제41조 자산의 취득 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제43조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익금산입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제27조 소득신고의 절차		제53조 과세표준			제91조 과세표준
		제4장 신고 결정 통지	제28조 소득의 조사결정	제4장 외국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및 그 계산	제4장 외국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 에 대한 법인 세	제1절 과세 표준 및 그 계산	제92조 국내원천징수금액의 계산
			제29조 수시부과		제54조 국내원천징수 소득금액의 계산		제55조 국내원천소득	제93조 국내원천징수소득
			제30조 원천징수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57조 세율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31조 소득금액과 세율의 고지		제2절 세액 의 계산		제58조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	제95조 세율
				제3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59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6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9조 과세표준
								제100조 비과세
								제101조 세율
								제102조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등
								제105조 과세표준
								제106조 세율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08조 준용규정
		제5장 납부 징수 환급	제32조 납세지	제5장 보칙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립신고	제6장 보칙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33조 납세지의 신고, 지정		제61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제62조 장부의 비치 기장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35조 납부기한		제63조 사채모집조서		제112조 장부의 비치 기장	

		제36조 징수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113조 구분경리
		제37조 사업소득에 관한 연대납부의무		제65조 대리자의 서명날인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제38조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제66조 보고서의 제출의무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제39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		제67조 보조금의 교부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68조 질문검사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제69조 무기명사채와 지불준비금의 이자수령자의 신고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 비치
				제70조 시행령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40조 상업장부의 구비의무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제41조 사채모집조서				제121조 질문 조사
		제42조 무기명사채와 예금이자수령자의 신고				제1조 시행일
	제6장 잡칙	제43조 지급조서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44조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제3조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가산세				제4조 신고 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5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토지증여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12조 이자소득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 13조 준비금 등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2. 구조내의 변화

구조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이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법인세법인데 이 법은 한 몸 안에 실체법과 절차법인 다 들어가 있는 셈이다. 즉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실체법성격이고 후자는 절차법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의 법인세법의 제정이유와 법인세법의 내용, 1961년의 전면개정이유와 법인세법의 내용, 1967년의 전면개정이유와 법인세법내용, 그리고 1998년의 전면개정이유와 그 내용을 가지고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분석하여 보자.

### 가. 1949년의 법인세법의 제정이유와 내용

#### (1)제정이유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

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부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2)내용: 세법규정은 부록으로 첨부

#### 나.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823호의 폐지제정이유와 내용

##### (1)폐지제정이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반감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

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⑥법률 제62호 법인세법을 폐지함.

(2)전문은 부록첨부

#### 다. 1967년 11월28일 법률 제1964호의 전문개정이유와 내용

(1)전문개정이유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강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김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2)전문: 별첨

## 라. 1998년 12월 28일 법률 5581호의 전문개정이유와 내용

### (1)전문개정이유

1967년 전문개정 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②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99조).

④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법 제76조제1항).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



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제3호).

⑥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⑦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법 제114조).

(2)전문: 별첨

#### 마. 구조내의 변화<sup>100)</sup>

법인세법의 규정은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얼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크기로 금전납부를 징수할 것인가를 정하여 놓은 것이다. ‘누구에게’가 납세의무자이고 ‘어떤 경우’가 과세대상이며 ‘얼마에 대하여’가 과세표준이고 ‘얼마만큼의 크기’가 세율이다. 전술한 4분설이라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의 4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의 외연을 규정하는 것이 세법인데 법인세법은 기업이 어떤 경우에 얼마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금전납부를 내야할 것인가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1949년의 법인세법이 진화하여 2006년의 법인세법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1949년의 법인세법의 요소 중에서 2006년의 법인세법에 그대로 이전된 내용을 불변요소라고 하고 변화했거나 없어졌거나 새로 생겨난 내용을 가변요소라고 연구모델에서 명명하였다. 1949년의 법인세법의 구성은 법률 부칙포함 총46조문과 시행령 부칙포함 총39조로 구성되었다. 2006년의 법인세법은 법률이 부칙을 포함하지 않고 총122조이며 시행령은 부칙 포함하지 않고 총165조이고 시행규칙은 부칙 포함하지 않고 총8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조문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은 과세요건의 외연이 넓어지는데 불과하였다. 환언하면 1949년의 법인세법도 그 시대에 존속하였던 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징수를 위한 법률이었으며 2006년의

100) <http://www.moleg.go.kr/>(법제처)

법인세법의 규정도 2006년에 존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전술한 데로 조세의 징수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 것인데 1949년과 2006년의 조문수의 차이는 그만큼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의 외연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넓어진 외연을 분석해 보자.

〈표 4-5〉 납세의무

구분	1949	1961	1967	1998
납세의무	<p>(1)국내법인            (2)국내법인, 단 국내에 소득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법인            (3)비영리법인, 단 비영리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 관계자에게 귀속될때,            (4)대통령령으로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p>	<p>(1)국내법인            (2)국내법인, 단 국내에 소득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            (3)비영리법인, 단 다음에 계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① 단 비영리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 관계자에게 귀속될때,            ② 축산업, 제염업, 토석채취업과 의료업            ③~④전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참조)            (4)각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p>	<p>(1)내국법인            (2)외국법인, 단 국내원천소득에 한함.(단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한 소득)            (3)비영리내국법인, 단 다음에 계기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① 전과 같음(1960년 해당조항 참조).            ② 축산업과 의료업            ③ 부동산 대여와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④ 전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4)국가,지방단체와 시군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5)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함</p>	<p>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에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표 4-6〉 과세소득

구분	1949	1961	1967	1998
과세 소득	(1)각 사업연도소득 (2)청산소득	(1)각 사업연도소득 (2)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1)각 사업년도 소득 (2)청산소득에 대해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표 4-7〉 과세표준

구분	1949	1961	1967	1998
과세 표준	(1)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각사업연도개시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공제한 금액	(1)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1)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다음에 계기하는 소득 또는 금액을 공제한금액 ①비과세소득 ②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2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③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익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법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법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표 4-8〉 서울

구분	1949	1961	1967	1998
서울	(1)일반법인 100분의 35 (2)특별법인 100분의 20	(1)100분의 20 (2)100분의 10(증권거래소 통하거나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모발기 또는 증자한 법인(단, 설립 또는 증자한 날로부터 5년간)	(1)일반법인 100만원 이하 100분의 25 100만원 초과 100분의 35 500만원 초과 100분의 45 (2)공개법인, 비영리법인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100만원 초과 100분의 30 500만원 초과 100분의 35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6 1억원초과:1천6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②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법인세법 구조내의 분석결과

조세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조정 및 유도 의 수단도 되는 것이다.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며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며 동시에 국민의 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1949년에 처음으로 도입당시에는 법률 46개의 조문과 시행령 39개의 조문으로 출발하였지만 2006년의 법인세법은 법률 122개조문 시행령 165개조문 시행규칙 82개조문의 방대한 양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세 중에서도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수로 보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도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1949년에 제정되어 1961년 1967년 1998년의 커다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제정당시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진화란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부분과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부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연구모델에서 제기했던 쉽게 변하지 않는 불변요소와 빠르게 변하는 가변요소는 무엇일까? 불변요소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지속성 상속성의 개념인 경로의존성을 말하고 가변요소는 변화의 개념인 변이 및 요동부분을 말한다.

#### 가. 경로의존적 특성의 분석

법인세법상의 경로의존적 특성은 과세요건이다. 법인세뿐만 아니고 모든 조세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징수할 수가 있다. 과세요건이란,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 얼마의 금액에서, 얼마를 거두워 갈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조세법률주의이다. 1948년에 제정되었던 제정헌법 29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조세법률주의의 천명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인세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1) 납세의무자: 누가 납세자가 될 것인가? 납세자의 분류는 협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징수의무자 등을 말하는데 각종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세실정법상에서는 납세의무자라고 한다. 법인세법상의 납세의무는 법인실재설에 따라 법인이 지고 있다. 따라서 이 납세의무는 법인이 파산하면 동시에 납세의무도 소멸되지만 기업이 존속하는 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기업의 다각화가 일어나면 납세의무도 확장될 수 있지만 의무자체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로 의존성의 입장에서 보아도 변함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2) 과세대상: 각종 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득 재산 그리고 소비지출이다. 이것들은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물적 기초이다. 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은 재산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취득 소유 이용 소비 이전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며 이것은 각 개인의 담세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다. 과세대상은 각 세법마다 다르다.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소득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의 제정당시의 과세대상이나 현재의 과세대상이나 같으며 경로 의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과세표준: 세금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을 일정한 가치척도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즉 금액 용량 건수 등의 척도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대부분이 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제정 당시의 과세표준이나 지금의 과세표준이나 같으며 경로 의존적 특성을 갖고 있다.

(4) 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산출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법률이 정한 비율이라고 말한다. 세율의 종류 크기 누진구조의 완급 등은 그 나라의 자본축적의 정도 소득분배정도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 납세도의와 조세포탈의 정도 재정수요의 크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거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정하여지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리 또는 원칙이 없다.

이 서울도 경로의존적 특징을 갖고 있다.

## 나. 변이와 요동

가변성은 진화적 입장에서 보면 가변성변이와 요동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1949년에 제정된 법인세법은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가? 194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법인세법이 크게 변화 한 것은 1961년의 개정과 1967년의 개정 그리고 1998년의 개정이다.

### (1)1961년의 진화

1961년 12월 8일 법률 제 823호로 폐지제정 된 법인세법은 폐지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동시에 세제의 간소화 및 세정의 자동화를 도모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①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의 구분을 폐지함.

②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공모하거나 자본을 증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반감하고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부과규정을 철폐함.

③시설적립금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그 대상업종을 확대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경감률을 2배 인상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⑤인정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확한 기장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는 일정한 산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실효를 얻도록 함.

### (2)1967년의 진화

1967년의 진화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청의 발족과



함께 강화된 조세행정을 적절히 활용하여 확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전문을 개정하였다.

①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을 분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법인에 대한 정부조사결정을 배제함.

② 중요산업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투자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선박의 제조·제철·제강·발전·자동차·전자, 국토개발건설사업등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6%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

③ 기부·접대비 한도액을 조정하고, 일정액의 퇴직금 및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심사제도를 채택함.

④ 종전의 감가상각제도는 그 내용연도가 비교적 장기이고 부합리한 점이 있어 고정자산을 재분류하고 내용년수를 단축하였으며 특히 외화획득사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시설과 중소기업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함.

⑤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성실신고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납세의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를 조정함.

⑥ 납세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의 환부처리기간을 명문화함.

### (3) 1998년의 진화

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개정을 하였다.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제19조·제26조·제34조·제76조제5항 및 제116조).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법 제25조 및 부칙 제9조).

(다) 합병법인이 피합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법 제44조 내지 제4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99조).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법 제76조제1항).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법 제92조제2항제3호).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101조제1항 및 제105조 내지 제108조).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축소함(법 제114조).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일련의 경로의존적 특성과 함께 변이와 요동을 겪어왔다. 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은 단순히 조세진화의 한과정이나 몇몇 제도의 변

화처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가의 독특한 제도적 상황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면서 매우복잡하고 상황맥락적인 문제로 대내외의 환경과 역사적인 제도아연한 사건 등 여러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났으며 의도하지 않는 창발적 질서로서 진화되어 왔다. 그 변이와 요동은 매년 일어났다고 할 수 있으며 보다 큰 변이와 요동은 1961년, 1967년, 1998년에 일어났다. 이러한 변이와 요동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한국경제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여왔다. 1960-1970년대 전개된 경제성장전략을 민간주도가 아닌 국가주도로 이끌어 감으로써 중앙정부의 집중화가 강화되었는데 법인세법도 그에 맞추어서 요동과 변이를 하였었다.

둘째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거쳐 미군정기를 지나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였다. 4.19혁명과 5.16군사혁명을 거치면서 유신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 국가재정도 정치적 상황에 따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법도 국가재정의 수요에 따라 변이와 요동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국가재정은 조세에 의하여 조달됨으로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경제침체나 IMF같은 사태는 조세수입을 극히 감소시키게 됨으로서 국가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변이와 요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국가재정을 운용하여 나가는 과정에 조세제도가 끊임없이 변이되었다. 법인세법의 개정과정을 보면 복잡한 세법을 단순화한다든가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세율을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재정확충방안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다양한 재정확충방안으로 귀착된다.

다섯째 국가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가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습효과 때문이다.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의 제정 및 발전과정을 진화론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진화과정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법인세법 특유의 진화경로를 거쳐 왔다. 이와 같은 진화과정의 흐름은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가변과 불변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역사적으로 진화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6.25라는 전쟁을 치루고 4.19혁명과 5.16군사혁명, 그리고 경제개발의 연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법은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여왔다.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면서도 조세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경로의존적인 과세요건은 외연만 확장 되었을 뿐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포는 변하지 않았다. 외연이 확장된 이유는 국가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면서 재원확충의 요성이 발생하였고 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법인세법도 외연을 넓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많아지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이 커짐으로써 외연이 확장된 것이다.

요동과 변이는 해마다 일어났다. 기업환경이 바뀌고 재정이 팽창하면서 재정수요에 충당시켜야 할 재원을 해마다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949년의 납세의무자는 제1조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2006년의 법인세법에서는 5조문에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법인세법 64조 86조 97조 102조 및 2조 2항 그리고 2조와 3조가 납세의무의 관련조항이다. 이렇게 납세의무의 외연이 넓어진 이유는 전술한 대로 기업환경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동기이다. 법인세법의 진화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경로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과세요건의 내포는 경로 의존적이다.

둘째 법인세법의 진화는 한국경제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인세법도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넷째 국가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살림살이를 위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나타나 세법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다섯째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 같은 특례제도 때문에 변이와 요동을 거듭하였다.

본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관찰대상의 한계이다. 본 논문의 분석의 출발은 기업회계 관련제도들을 상대로 진화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상법을 비롯하여 기업회계기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발전에 대하여 진화적인 접근을 해보고자 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은 연구기간과 관련 자료의 미비로 연구범위를 법인세법에 국한하였다.

둘째, 법인세법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인간 행동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곽태원. 『국가 및 경제재건시대의 조세정책』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7.
- 김기태. 『한국재정론』 · 서울: 법문사, 1999.
- 김병근. “사회진화론의 발생과 전개.” 『역사비평』, 계간32호, (1996).
- 김봉렬. 『차길준 개화사상의 연구』 ·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 김호연. “다윈진화론의 역사적 변용.” 『강원사학』, 제15호, (1995).
-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서울: 민음사, 1991.
- 문상화. “진화론:19세기 영국의 지배담론의 한 양상.” 『영국사학회』 5권, (2001).
- 민경국. “구성주의적 합리주의와 진화론적 합리주의.” 『과학철학』 5권, (2000).
- 박세영. 『라디미르 레닌, 제국주의론』 · 서울: 과학과 사상사, 1998.
- 박찬승. “한말 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계간32호, (1996).
- 신홍범 · 김종철, 『J. A. 홉슨, 제국주의론』 ·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성지은. “지방재정진화과정분석.” · 지방행정연구, 2005.
- 양일모. “엄복의 서학 수용방식과 개량주의적 한계.” 『철학연구』, 제20집. (1992).
- 예종영. “세계정치와 진화: 국제정치학의 진화론적 개념들과 세계정치 진화론에 대한 검토.”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유길준. 『차길준 전서』 · 서울: 일조각, 1971.
- 유길준. 『서유견문』 · 서울: 한양출판, 1995.
- 윤건차.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그 영향』 · 서울: 역사비평, 1996.
- 이준규. 『법인세법』 · 서울: 세학사, 2000.
-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1993).
- 정창인. “스펜서의 진화론적 자유주의.” 『정치사상』, 1999.
-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6.
- 최광 · 현진권. 『한국조세정책50년』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최명근. 『세법학총론』 · 서울: 세경사, 2003.
- 최인호 외 번역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 서울: 박종철 출판사, 1994.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한국 행정논총』, 44호 (1996)

황태호. 『자연의 변증법』 · 서울: 전진, 1989.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1945-1955)』

국사편찬위원회 편, Yun Cbi-Ho's Diary Vol.Ⅱ (1890)

독립신문. 건양원년 8월 4일자 논설, 광무 2년 4월 7일자 논설, 광무 2년 11월 11  
자 논설, 그리고 광무 2년 12월 6일자.

독립신문, 1899.4.7. 논설.

독립신문. 1898. 1. 22. 논설.

[http://www.moleg.go.kr/\(법제처\)](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faculty.washington.edu/modelski/bibliol.html>.

Avner. G. *Institutions and the Path to the Modern Economy: Lessons from Medieval Trad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Bruno. A.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Of Vicissitudes of Things*. Eiseley, Darwin's Century: Evolution and the Men Who Discovered It. 2002.

—————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Diversity of Social System of Innovation and Production."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00.

Charles, L. *Principles of Geology*. 2002.

Charles, D. *The Origin of Species*. 2003.

Darwin M. "Theory of Natural Selection."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971.

- David. S, John P. and Lange D.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in Herbet Kitschelt, Stephens(eds.),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in Herbet Kitschelt, Stephens(eds.),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Douglass C. N.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Edward M. *The Young Darwin and His Cultural Circle Dordrecht.* Holland: D. Reidel, 1978.
- Egerton. F. N. “Studies of Biology.”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1968.
- Elinor. O.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Ernst M. “Darwin an Natural Selection.” *in American Scientist*, 1963.
- Erik. B. *Integrating Ideas into Policy-Making Analysis: Frames and Race Policies in Britain and Franc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02.
- Franz M. W. “Evolution and Causality and Human.” *Evolutionary Theory in social Science*, 1987.
- Gavin de B. Charles D.: *Evolution by Natural Selection.* London: Nelson, 1963.
- George M, Kazimierz P. Evolutionary Paradigms in the Social Scienc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1996.
- Hallpike C. R. *The Principles of Social Evolution.* Oxford: Claredon Press, 1986.
- Hollingsworth. J. R. “Doing Institutional Analysi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Innov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000.



- James A. R. Darwinism and Social Darwinism."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972.
- John C. "Analogy and Technology in Darwin's Vision of Nature."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1984 .
- John L. C, Lars M, and Jan O. *Mechanism of 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 Interaction, Interpretation, and Bricolage," Evolutionary Economics and Path Dependence*. Cheltenham: Edward Elgar, 1997.
- John L. C, Gerald F. D, Doug M, W. Richard Scott, and Mayer N. Z, *Where Do We Stand? Common Mechanism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Research*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 Theory, 2005.
- John L. C, Lars M and Jan O. *Mechanism of Evolutionary Change in Economic Governance: Interaction*. Cheltenham: Edward Elgar, 1997.
- John L. Campbell, *Institutional Change and Glob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John L. Campbell, and Ove K. P. *Institutional Analysis and the Role of Ideas in Political Economy. The Rise of Neoliberalism and Institution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John L. C, Gerald F. D, Doug M, Scott W. R, Mayer N. Z. *Where Do We Stand? Common Mechanism in Organizations and Social Movements Research.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 The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Judith. Goldstein, and Robert O. K. *Ideas and Foreign Policy: An Analytical Framework*. Ideas and Foreign Policy: Beliefs, Institutions, and Political Change, 1993.
- Karen. O, Stephen. S. *The Search for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Kathleen. T, James M,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2003.

- Kathleen. T. "*How Institutions Evolve: The Political Economy of Skills in Germany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Lewontin. R. C. "Evolution: The Concept of Evolution."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968.
- Loren E. *Darwin's Century: Evolution and the Men Who Discovered It.* New York: Anchor Books, 1990.
- Marc. S. "Combining New Institutionalisms: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American Property Insurance." *Sociological Forum*, 2005.
- Mark M. B. *Institutions and Ideas.* in the David Marsh and Gerry Stoker(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2nd ed Any More Bright Ideas? The Ideational Turn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Comparative Politics, 1997.
- Michael R. "Charles Darwin and Artificial Selection." *in Journal of The History Ideas*, 1975.
- "The Nature of Scientific Models: Formalv. Material Analogy." *in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1973.
- Neil. B. "The Policy Influence of Economic Ideas: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novation in Canada."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1999.
- Peter J. B. "Malthus, Darwin, and The Concept of Struggle."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976.
- Peter V. "Darwin Malthus and Theory of Natural Selection."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1969.
- Robert M. Y. *Malthus and the Evolutionists: The Common Context of Biological and Social Theory.* 『in Past & Present, 1969.
- Robert C. L. "Ideas, Institutions, and Political Order: Explaining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02.

- Scot W. R.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2nd(ed), Thousand Oaks, CA: Sage, 2001.
- Siobhan. H. *Theorizing Institutional Change*. I Andre Lecours(ed.), *New Institutionalism: Theory and Analysi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 Vivien. L. "Institutionalism in David Marsh and Gerry Stoker(eds.), *Theory and Methods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2,
- William R. T. *“Evolving Toward an Evolutionary Perspective.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2001.
- William R. T. and George M. *Evolutionary World Problems of Scope and Metho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2001.
- Wolfgang. S. and Kathleen T.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2005.

## 【부 록】

[제정 1949.11.7 법률 제62호]

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소득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서만 이를 부과한다.

제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4조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법인세는 전항의 소득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의 직전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1항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전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소득세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세의 부과에 이를 준용한다.

신탁은행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대하여서는 합동운용신탁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은 그 총익금과 총손금에서 각각 이를 공제한다.

제6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써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한다. 법인이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불입제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김전의 총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합병당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적립금액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를 합병으로 인하

여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초부터 해산 또는 합병시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제8조 본법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적립금 기타 명의의 여하를 부문하고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로서 납부할 금액은 전항의 유보한 금액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 좌에 계기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제2호 해당법인의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법인관계자에게 귀속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써 지정하는 공공단체

2.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법인

제11조 공공성을 가진 국책상 중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서 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선적을 둔 선박의 소득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단, 그 선적국이 대한민국선박의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법인이 소유하는 국채의 이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조선은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 법인의 청산기간중 생한 소득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생한 소득으로서 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법인세의 세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백분의

35를 승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이 각사업연도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 25조에 규정한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경우에 공제할 특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2항의 규정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동족회사가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유보한 금액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 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31, 5백만원 초과 금액에 백분의 46, 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2, 2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8, 3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5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각호에 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액인 편)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

2. 각사업연도 소득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의 합계가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단,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유보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과 그 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8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청산이나 합병에 관한 계산서와 가치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소득금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은 그 이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에 관한 손익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1조에 규정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액금신고와 동시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법인의 소득금액은 제18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납세의무있는 법인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과 김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액, 수량, 가격, 지불기일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일체의 장부 물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가산을 결정한 때에는 정부는 이를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만을 가진 법인으로서 납세관리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통지는 공고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공고의 초일부터 7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4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정부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26조 법인세는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 또는 합병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제27조 납세의무있는 법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써 납세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세금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9조 정부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법인세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0조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거나 자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써 납세지로 한다.

제31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납세지를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정부가 그 납세지를 정한다.

제32조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장만을 가진 법인은 그 소득의 신고, 납세 기타 법인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내의 자산 또는 사업장을 국외에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그 소득이거나 주주, 사원 또는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관계있는 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부구하고 정부는 그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 제20조에 의한 정부의 조사로써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서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에 백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에 그 계산한 소득금액이 정부의 조사소득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때에는 그 소득의 차액에 대하여서만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추정한다.



제35조 사위 기타 불정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자는 그 포탈한 세금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장부물건의 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한 장부를 제시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7조 법인의 소득조사 또는 심사의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심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한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법인세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법인에 대하여서는 제14조 또는 제17조 및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적용에 있어서 본법중 소득은 잉여금으로 하고 제16조의 세율 백분의 35를 백분의 20으로 한다.

부칙 <제62호,1949.11.7>

제4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청산소득에 대하여서는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에 해산 또는 합병한 것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42조 단기 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각사업연도의 소득 및 단기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3조 단기428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사업년도전 사업년도분의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법인세로 간주하여 본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단기4281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을 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최후의 사업연도분의 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제1종 소득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소득세는 이를 본법 제8조제2항, 제9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법인세로 간주한다.

제45조 본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단기4281년 12월 31일이전의 조선소득세령에 의하여 납부한 제2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은 이를 특별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법인의 사업연도가 단기4282년 1월 1일이후 본법 공포일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 조선소득세령 제37조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는 이를 본법 제18조에 의한 소득금액신고서로 간주한다.

